2018

12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기획특집]

"성폭력역고소의 현시점을 묻다"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반성폭력 활동가 · 연구자 전략 좌담회

[상담일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_ 5년간 상담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쟁점과 입장]

성폭력역고소의 상업화와 '보복성 기획고소'

미투운동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론의 충돌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기고]

안희정성폭력 1심 판결문 비판

문화예술계 성폭력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mark>응지원으로</mark> 맞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기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



울림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8년 동안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며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이론 · 성폭력 문화 · 성폭력 법 · 정책 · 제도를 분석하는 연구소입니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조직 내 성차별적인 구조와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유발론이나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통념은 아직도 만연합니다. 성폭력 근절 운동은 성폭력 예방, 사건 지원,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 더불어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성주의적 언어와 이론의 생산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울림은

현장의 언어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반성폭력 연구물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실천과 이론의 순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세워진 연구소입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큰 울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부설연구소 연혁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1997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2009년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해소 2014년 부설 연구소 울림 개소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원고 모집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소논문(A4 10 내외) 투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할 수 있습니다. (research@sisters.or.kr)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

기획득십	
"성폭력역고소의 현시점을 묻다" _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반성폭력 활동가·연구자 전략 좌담회	<u>.</u>
상담일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_ 5년간 상담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21
쟁점과 입장	
	59
미투운동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론의 충돌	81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105
기고	
 안희정성폭력 1심 판결문 비판	115
문화예술계 성폭력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응지원으로 맞서다	121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기	129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	136

기획 특집

"성폭력역고소의 현시점을 묻다"

_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반성폭력 활동가·연구자 전략 좌담회

"성폭력역고소의 현시점을 묻다"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기 위한 반성폭력 활동가 · 연구자 전략 좌담회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이안젤라홀

- 사회자
 - 김보화(본 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석자(가나다순)
 김미순(천주교성폭력상답소 소장), 손문숙(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이선경(법무법인 유림 변호사). 장주리(본 상담소 부성연구소 연구원). 최라(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기
 앎(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수민(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2018년 '미투운동'은 한국사회 반성폭력운동의 지형을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폭력피해자들의 폭로가 올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경부터 SNS에서 각종 해시태그 운동 등의 방법으로 '#ㅇㅇ계 성폭력' 폭로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그때 말하기를 결심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해자, 가해자 가족, 가해자 지인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상손해배상 등의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거나 때로는 가해자나 검사로부터무고죄로 고소·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적극적인 공격은 불붙던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추가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는 성폭력역고소 특집으로 기획하였고, 오늘 좌담회는 반성폭력 활동가·연구자들을 모시고 역고소를 남용하는 가해자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에서는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와함께 『성폭력역고소 피해자지원 안내서』를 제작하고, 올해 초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는 등 성폭력피해자에대한 각종 역고소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최근 성폭력역고소 사건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더불어 과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 ZI미순 2010년대에 성폭력역고소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번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 6월에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후, 백래시(backlash)의 일환으로 역고소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박○○, 이○○ 등 유명연예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는 큰 죄"라는 대국민 무고 협박이 있었고, 세 번째가 미투 정국 이후에 각계각층에서의 역고소 피해인 것 같아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경우를 보면 과거보다 역고소 수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하기에 과한 수준은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가 높아지고, 고소도 많이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가해자에게 했던 적극적인 행동들이 사법 절차로 넘어왔을 때는 여전히 무고의 근거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 다음 날 보냈던 메시지, 주변에 했던 이야기들, 사과 요구 등이 성폭력이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후에는 무고기소의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죠.
- 이선경 성폭력역고소가 과거보다 실제로 늘어났는지, 아닌지는 각각 경험치에 따라 다르니 잘 모르겠지만, 반대급부일 수도 있는 게 피해자들이 고소를 많이 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위험도 똑같은 비율로 높아지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지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해자들이 역고소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추지현** 이전에는 유명인 위주로 성폭력 사건들이 보도되었고, 유명인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고소했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 카톡방

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이 공유되면, 실제로는 성폭력 고소도 하기 전에 먼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니 실제로 처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많 이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



최란 처벌되지 않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것 같아요. 전화상담할 때도 보면 피해자들이 무고 우려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가해자에게 역고소 위협을 많이 받기도 해요.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소송의 대응은 시간,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지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전에는 유명인 위주로 역고소했다면 이제는 사인(私人)

간에 무고나 역고소가 많고, 검사가 이미 검토했는데도 원래의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처분 받자마자 바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생겼어요.

이선경 과거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을 대자보 형태로 폭로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게시판, SNS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너는 왜 확산성이 가장 큰 온라인 게시판에 썼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소문숙 우리가 작년에 『성폭력역고소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 때도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이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두려움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피해자 상담할 때 "성폭력 당했어요"와 명예훼손, 무고 걱정이 세트로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김보화 그렇다면 가해자가 역고소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 **김미순** 최근에 지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측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중인을 모해위증죄로 역고소했어요. 이게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역고소 위협인데,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고로고소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피해자에게 무고를 걸고 싶은 마음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거죠.
- 최란 가해자가 명예훼손 걸기 너무 쉽고, 인정되기도 수월해요. 손해배상소송 도 몇천만 원씩 걸어버리면 지지하는 사람도 위축되고, 지지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크게 위축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전략적으로 다 차단시키는 행위인 거죠.
- 이미경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피해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천만 원가량의 돈을 가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주고 이런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가해자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시작이 되면 주변에서 "어, 진짜 피해자가 아닌가봐" 하면서 2차 피해가 시작되고, 전문가가 개입하면서 법적 허점들을 찾을 찾기 시작하죠. 피해자들이 자기한테 불리할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비수가 되어서 불리하게 작동되고 엄청난 공격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이선경: 역고소는 피해자나 지원자, 조력자들을 겁먹게 하고, 숨게 하려는 효과가 있어서 가해자들은 자기가 고소했다고 여기저기 알리더라고요. 때로는 일부에게만 역고소하기도 해요. 김〇〇 감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론에 인터뷰한 피해자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역고소한 거죠. 그걸보완해주는 것은 아마 고소 대리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다고소하지는 말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해주기도 하거든요

김보화 일부 법인들에서는 가해자의 '승소'를 이끌겠다며 홍보하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성폭력역고소를 묶어서 '패키지화'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 장주리 인터넷에서 성폭력 신고나 고소에 대해서 검색하면 가해자 측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나와요.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가해자를 돕는 정보만 나오면 박탈감이 심할 것 같고 이를 어떻게 걸러내고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 이선경 어떤 법인은 광고비만 2천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는 공장이죠. 광고 올리는 사람이 있고, 전화상담만 받는 변호사가 창구에 따로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안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 최란 '역고소 패키지'는 사실 가해자들이 성폭력가해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고, 그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들에게 "쟤는 무고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피해자는 '성범죄 전담변호사'라는 홍보를 보고 성폭력피해를 변호하는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해자 전문변호사고, 몇천만 원 내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의견서도 안 쓰고 항고장도 안 써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 **김미순** 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강한 징계가 따라오기 때문 에 가해자들의 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은 성폭력가해자가 되는 순간 미래가 사라지고, 취업도 할 수 없고 공공기 관도 갈 수 없으니까 전투적으로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들 은 고기떼를 만난 거에요. 당분간은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보화 법·제도적 문제들을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을 공론화한 후에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가

- 이선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아웃팅 당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으로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적 침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폭력의 경우 성관계 영상, 사진, 이런 것만 올리는게 아니라 서로 나눈 카톡 내용 같은 것들도 올려요. 그게 모욕죄 적용이안되기 때문에 명예훼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추지현 저도 예전에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요. 혐오표현에 관한 연구하면서도 봤지만,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너무 많이 떠벌리고 다니기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할 안전망이 필요하긴한 것 같아요.



김보화 역고소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선경 현재 성폭력으로 신고나 고소하면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청계)에서 여경이 조사하고, 신뢰관계인이 함께 할 수 있고 나름의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경제팀에서 남경이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수사하기도 하는데, 성폭력피해자이지만 피해자 권리보장이 안 되는 게 문제인거죠. 이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 되었어도 성폭력 사실 자체가 허

위냐, 아니냐가 문제라면 똑같이 여청계에서 수사했으면 합니다. 여청계는 그나마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편이고, 말도 조심하는데, 경제팀은 그런 인 식이 부족해요. 그것은 절차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꼭 법을 바꾸지 않아 도 경찰청장님이 지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경 이 문제를 2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반성폭력운동 단체들은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을 위 한 조치들을 만들어왔는데, 말씀들처럼 역고소 걸리면 피해자의 모든 권 리가 중단되어버리는 부분이 문제에요. 일례로 저희 상담팀 선생님은 신뢰



관계인 동석을 안 해줘서 4시간 동안 밖에서 기 다린 적도 있어요.

이선경 원래 원처분 검사가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불기소 이유서를 쓰면 무고와 같은 역고소 잘 안 하고, 다음 검사가 그걸 보면 역고소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검사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고혐의없음에 대한 표기를 꼭 써달라고 제안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래도 고소가 들어올 경우 다음검사가 그걸 뒤집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폭력을 기

소하면 되는데, 불기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추지현 한국의 고소건수가 너무 많고 불기소처분도 너무 많아요. 수사 효율성, 인력, 시간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고소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민원상담실에 민원상담관을 두면 담당 형사도 가해자가 홧김에 역고소하는 것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못 막겠지만요.

소문숙 2018년 초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 까지 무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게 만든 것이 운동의 성과인데, 무고

로 고소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무고·역고소가 무고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알리고 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김보화 성폭력역고소 피해지원자로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 **김미순** 역고소 피의자가 되면 지원자도 처음부터 다시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다시 증명해야 하는 작업이 기운 빠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피해자가 역고소 당하면 '내가 그 과정에서 더 잘 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 최란 우리가 지원하는 분들이 성폭력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자로서 권리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피해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생겨버리는데, 그 지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검사에 의해서 무고가 인지되는 건수가 더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검사가 무고로 기소하면 바로 법정구속이 많았어요. 1심 선고하면서 바로 법정구속이요. 공개 재판할 경우에는 성폭력피해 내용이 다 공개되는데, 저도 그때지원자로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 이미경 실제로 유명연예인 박ㅇㅇ 사건에서 무고로 기소된 피해자들 중에 한명은 유죄, 한명은 무죄를 받았어요. 연예인 이ㅇㅇ의 피해자도 1심에서 무고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협입니다. 1991년에 지원했던 사건 중에 피해자가 검사인지로 무고로 기소되었고 바로 구속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풀려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한 자괴감과 자책감이 든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무고를 겁내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과 무거움이 도사리고 있고, 그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되고 있

다는 것은 운동 차원에서 여러 부분 봐야 할 것 같아요. 2018년 3월에 UN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성폭력 무고 수사 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요.

김보화 성폭력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역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나누는 것이 좋음까요?

최란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다.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질수록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가해자가 다 처벌될 거라는 기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수 사과정에서 증거도 필요하고, 일관된 진술도 필요하고, 피해자다움도 요구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무고 가능성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증거를 잘 모으는 방법' 처럼 조력자로서의 조언이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역고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받는 부담이 다르니까요.

추지현 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할까요?" 물었더니 경찰관이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면서 "참 힘들겠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시라. 하지만 나 같으면 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좋았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있었어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피해자들이 "그래 한 번 붙어 싸워보자!" 이런 역량이나 내공을 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법적 절차에서 역고소가 발생하면 없었을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피해자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에게도요.

김미순 피해자가 가진 자료와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상황을 해석해 내는 능력이 얼마나 있으냐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바이케이스에요. 어떤 피해자는 힘이 없고 어떤 피해자는 직면할 힘이 있고, 때로는 이 과정을 촘촘하게 만나다보면 정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 고소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김보화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사법적 의존도가 높아진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추지현 당연히 꽃뱀 신화, 성폭력 통념 등도 있지만 백래시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막게 되는 거죠. 공동체 내 사건처리에서 피해자가 뭘 원하는지 듣고, 가해자의견도 듣고, 피해자가 뭘 느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필요하면 진술 여러번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학생인권센터 같은 기관을 만든 건데, "처벌 원하면 그냥 형사처벌하면 돼지. 그걸 왜 학교에서 하냐?"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가해자가 반



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미경 고소가 성폭력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는 이제 학교 내 센터에서 조사할 때도 변호사를 데리고 가 고, 하나라도 책잡히지 않겠다는 태도로 임하 고 있어요. 결국 다시 성폭력을 어떻게 판단하 느냐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법적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에만 천착해있고 해결과정 에서 내가 잘못했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



과해야 한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김미순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자 할 때, 그 스펙트럼은 너무 넓지만, 그 진심이 무엇인지 구조화하는 작업부터가 치유의 과정이고, 가해자가 변화하는 과정인데 이미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받아야 하는 처벌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항도 큰 것 같아요.

소문숙 반면에 피해자가 법적 해결을 원하는 상황은 공동체 안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나 토대 자체가 부재할 때, 당연히 국가가 개입하고 공적 영역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기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보화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선경 만약 피해자가 무고로 구속됐었지만, 향후 재판결과 무죄가 나왔으면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를 요구해볼 수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했 더라도 무죄가 나온 후 법원에 청구하면 나와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같은 걸로 검사가 약식기소할 때 불응해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무죄받는 경 우들이 있는데, 이때 형사소송비용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 물론 가해자도 받을 수는 있죠. 교통비, 변호사 보수비 등등 실비 개념 으로 정형화되어서 받아요. 변호사까지 필요 없고 법무사가 서류 내면 돼 요. 사실 역고소 문제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성 폭력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에서는 비동의가음죄를 주장하고 있구요. **김미순** 역고소가 반성폭력 운동의 발목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각오. 그 한 마디 면 되지 않을까요?

소문숙 우리가 계속 피해자다움, 성폭력역고소의 효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 업계의 시장화는 가해자도 이용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리는 이슈파이팅이 더 필요한 것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들고 언론에도 많이 알려야 할 것같아요. 이 시장이 어떻게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파고드는 것이 방법일 텐데,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광고가 되는 것이 아



닐까. 그래서 망설여지는 지점도 있지만요. 긴 싸움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너무 힘들기도 해요. 저희가 지원했던 무고 사건에서 검사가 대법원까지 3 년간 항소해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하자고, 계속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분 입장은 이제 법원은 가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싸움이 후회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안 하고 싶으신 거죠.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하면서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경 2004년에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두 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역 고소가 반성폭력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해왔죠. 그때 활동가들은 우리 도 감옥갈 수도 있다는 각오들을 했는데, 우리를 고소하지 않고 피해자만 고소하더라구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많 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란 역고소 피해자지원도 촘촘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공동대책위 활동 등에서 피해자 재판 시 방청연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역고소 재판에도 와



줬으면 좋겠다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방청연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상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법과 제도에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나 개선에 대한 제안도 필요할 거고요. 가해자의 무고가 무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여기저기 알렸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러한 전략이 실패된 전략임을 가해자가 인지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추지현 역고소를 무고로 고소해서 승소한 판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하기가 법적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데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동운동할 때 보면,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 걸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거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법적 방해'라고 말하는 외국 판례들이 있는데. 우리도 '미투' 이후로 이것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봉쇄전략임을 알리고, 사회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적 체계에 저항한다는 프레임을 가져가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장주리 역고소의 상업화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카르텔처럼 여성의 피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역고소 피의자가 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역고소 자체를 무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여성의 피해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요

김보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성폭력역고소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 시장화의 논리, 사법 절차 과정에서의 남성중심성 등이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 역고소들에 저항하는 전략과 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회 마치겠습니다. ♣️

상담일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_ 5년간 상담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5년간 상담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3월, 한국정부에 대한 UN CED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최종권 고안에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7개 부분이 제시되었다(CEDAW/C/KOR/CO/8). 1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권고안 중에서도 특히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관례를 금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하였다.

2018년 전후로 한국사회에서는 '미투운동', 즉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가 확산되었으나 말하기가 대중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성

¹⁾ 여기에는 1, 형법 297조 개정(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 판단), 2.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에 폐지하고 화해와 중재 사용 금지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 보장하기,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금할 것, 4.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제재 및 예방조치 강화, 5.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제 확립, 6. 학 교·대학·군대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보고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엄격한 비밀보장, 7. 탈북여성들에게 적절한 상담 등을 위해 탈북여성센터에 재원 제공이 있다.

폭력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무고, 명예훼손 등의 각종 역고소²이다. 이러한 역고소는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은 2013년 6월 친고죄폐지 이후 더 이상 금전적 합의로 인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 상황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성폭력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홍보, 시장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행법과 수사·재판관들의성폭력 통념 속에서 옹호되고 있다.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에이르지 않더라도 역고소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크게 위축되어 대응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성폭력상담소에 '미투'를 언급하며 상담을 요청한 상담사례들은 고소 시에는 무고에 대한 우려를, 공론화를 고민할때는 명예훼손을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지원자들은 상담 시역고소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기록하는 상담일지는 피해자의 피해경험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한국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되어 야 할 역사적 사료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성폭 력상담소의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성폭력역고소 상담통계와 1년 간의 상담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폭력역고소는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후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한국 성폭력위기센터, 2016: 43)와 더불어 성폭력피해 사건지원자들 역시 역고소의 유형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 계하고 있는 성폭력역고소 통계가 부재하고, 오히려 무고의 경우 왜곡된 수치

²⁾ 이 글에서 성폭력역고소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을 고소한 후 가해자 및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 위증 등으로 고소·기소하거나,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형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고소 유형으로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모욕죄(「형법」 제3111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이 있다. 그 에에도 온라인 등에 사실을 알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390조, 750~766조)으로 역고소하기도 한다.

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³ 상담현장에서 드러나는 역고소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친고죄 폐지가 시행된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성폭력역고소 피해를 입은 사례 79건(374회)을 대상으로⁴ 상담횟수,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연령, 가해자의 성별·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의 유형, 역고소의 유형, 역고소를 행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으로 모든 성폭력역고소의 발생과 사건지원의 현황을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일지는 피해자들이 성폭력피해 이후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떤 지원을 기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유의미한 기록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게 어떤 기대를 하였으며, 어떤 공공서비스를 기대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하며(이미경, 2012),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심리적 상담 혹은 법적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작성된다는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장다혜, 2012). 특히 성폭력상담소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도 의뢰되기 때문에 신고·고소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에서의 성폭력,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모호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인 외 대리인의 상담도 포함되므로 성폭력으로 파생되는 주변인들의 호소와 요구사항도 드러날 수 있다. 이에 상담일지의 사례를 질적으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는 각 OO계 내에서 성폭력 폭로가 진행되고 있었던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간 상담일지이며, ⁵ 전체 상담 중에 성폭력

^{3) 2017}년 12월 7일자, MBN 뉴스초점, "사람 죽이는 무고죄", 출처: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328; 2016년 7월 28일자, 서울신문,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 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csidx622 600fffdc5e7bb5752b3a2108228b

⁴⁾ 분석대상은 2013년 6월 이전부터 상담 및 사건지원을 받고 있던 지속사례를 포함하였다.

⁵⁾ 분석대상은 2017년 6월 이전부터 상담 및 사건지원을 받고 있던 지속사례를 포함하였다

상담 1,300건(1,955회)⁶ 전수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 부터 무고,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피해를 입었거나, 역고소 위협, 협박을 받은 경우, 또한 역고소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하며 대응방법을 물었던 사례들이었 고, 특히 사례분석에서는 실제 역고소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위협, 협박을 받 거나 이를 우려하는 것까지 포함함으로써 역고소에 대한 우려가 피해자들에 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자 했다. 분석대상이 되는 사례는 79건(259회)에 해당하는 상담일지이고, 일지 리뷰 과정에서 주요하게 입 력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성폭력 상담일지 주요 입력 항목

대분류	소분류
기본정보	최초상담번호, 상담일련번호, 차수, 상담방법(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기타), 상담의뢰인, 피해자성별, 피해자나이, 가해자성별, 가해자나이, 피/가해자 관계, 피해유형, 피해장소, 지속피해횟수, 지속피해기간, 다른피해자유무, 피해시상태, 피해자상태(술/약물/수면), 피해자특성(장애여부, 이전피해, 국적 등)
대응과 과정	2차피해(경찰/검찰/법원/언론/의료/피해자가족/가해자가족/기타), 상담전조치및대응(의료기관/법적대응/주변인도움요청/사과요구/상담소인지경로 등), 법적절차(고소유형, 진행단계, 결과), 피해자요구, 상담원지원내용, 사건개요일지요약
역고소	유형(염려,협박,무고,명예훼손,위증,민사,제3자고소,기타 등), 신고/고소한 기관/사람, 피의자 인지시점, 법적절차(진행단계, 결과), 사건개요일지요약
기타	일지상 오류 등

이 글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성폭력역 고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해자들이 어떠한 용도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는 지, 수사기관과 가해자에게 역고소는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로 인해 피 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역고소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고소의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 를 도출하고자 한다.

⁶⁾ 이 글에서 상담건수란, 상담한 사례의 수를 뜻하고, 상담횟수란 누적된 모든 상담의 수를 말한다. 한 건의 상담건수는 횟수로는 1회부터 100회 이상까지 가기도 한다.

2. 성폭력역고소 상담통계 (2013.6~2018.5)

1) 지속지원이 많은 역고소

(표 2) 분석대상 사례의 상담횟수

단위: 건, %

	빈도	백분율
1회	40	50,6
2회 이상	39	49.4
합계	79	100.0

역고소피해가 파생된 성폭력 사례 79건 중 1회성 상담을 한 사례는 40건으로 전체 역고소 사례 중 50.6%이고, 2회 이상의 지속적 상담을 한 사례는 39건으로 전체 사례 중 49.4%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그 특성상 지속상담보다는 1회성 상담이 많은데, 역고소의 경우 2회 이상의 지속상담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역고소 상담사례는 지속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음을알수 있다.

이 가운데 1회성 상담은 사건 공론화 과정 혹은 법적대응 과정에서 역고소 피해를 입은 뒤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 담소로 연계한 경우가 많았다. 2회 이상으로 상담지원이 이어지는 경우 주로 상담소에서 성폭력사건을 지속지원하던 중 역고소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역고소피해를 입은 후 도움을 요청한 지속지원 사례들이었다.

2) 역고소를 파생한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 특징

〈표 3〉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 · 피해유형(중복)

단위: 건(%)

			0.1. 0.7
	여성 (N=79)	남성 (N=1)	합계 (N=80)
강간	20 (25.3)	-	20 (25.0)
준강간	12 (15.2)	1 (100.0)	13 (16.3)
강제추행	37 (46.8)	-	37 (46.3)
~~~~~~~~~~~~~~~~~~~~~~~~~~~~~~~~~~~~~	3 (3.8)	-	3 (3.8)
성희롱	10 (12.7)	-	10 (12.5)
기타	13 (16.5)	-	13 (16.3)

역고소가 파생된 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들은 역고소가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이다. 역고소 이전 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기타, 성희롱, 준강제추행의 순으로 피해가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중복피해를 입은 사례는 17건이었다. 이는 다른 성폭력 통계와 마찬가지로 강간과 추행 순으로 나타나는데, 강간과 추행의 피해가 추후 역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는 「형법」 297조 강간과 298조의 강제추행은 최협의설의 판단기준을 따름으로써 피해자가 폭행한 협박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의 형태도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다운 피해자'의 통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역고소피해와 연결된다. 7

⁷⁾ 허민숙(2017)의 연구에서 차진영(가명)씨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에게 병원지료비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병 원비가 과하다며 문제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다. 차진영씨는 이후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였지만, 병원비를 받 은 것과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무고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후 대법 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2년 8개월이 걸렸다.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

### 〈표 4〉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별, 연령

단위: 건(%)

	전체	유아 (7세이하)	어린이 (8-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전체	79 (100.0)	1 (1.3)	-	3 (3.8)	73 (91.0)	2 (2.5)
여성	78 (100.0)	1 (1.3)	-	3 (3.8)	72 (92.3)	2 (2.6)
남성	1 (100.0)	-	-	-	1 (100.0)	-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체 피해자의 98.7%가 여성피해자였으며, 여성피해자 가운데서도 92.3%가 성인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피해자 중 연령이 특정 불가능한 사례는 상담일지 내용상으로 연령 확인이 어려웠거나, 혹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SNS상에서 소위'ㅇㅇ계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1건의 성인남성 피해의 경우 남성가해자로부터의 피해였고, 마찬가지로 남성가해자가 남성피해자를 역고소한사례였다.

### 〈표 5〉 성폭력사건 가해자의 연령

단위: 건(%)

	전체	유아 (7세이하)	어린이 (8-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전체(남성)	79 (100.0)	1 (1.3)	-	-	78 (9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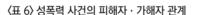
성폭력 사건에서의 가해자 대부분이 성인인 것은 역고소가 결국 피해자의 피해경험 말하기를 막고, 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것과 관련된다. 가해사실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1-31쪽 참고.

것을 막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일 정한 지위나 재력을 가진 성인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7세 이하의 유아 가 가해자였던 사례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피해자 의 부모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를 공론화하자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역고소한 사례였다.

지타 모르는 사람 6.3% 학교 8.9%

[그림 1]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 가해자 관계



단위: 건, %

데이트관계

20.3%

	전체	직장 및 공동체	데이트 관계	서비스 제공자	지인 (데이트 관계 외)	학교	모르는 사람	기타
빈도	79	24	16	12	11	7	5	4
백분율	100.0	30.4	20.3	15.2	13.9	8.9	6.3	5.1

역고소피해 사례 중 원사건 성폭력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 및 공동체⁸, 데이트 관계, 서비스제공자, 지인, 학교, 모르는 사람, 기타의 순으로 높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역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총

지인(데이트 관계 외)

13.9%

서비스 제공자 15.2%

⁸⁾ 여기에서 공동체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더라도 소위 'OO계'처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공동체 혹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내에서의 권력 및 지위의 차이가 성폭력 발생과 연관성을 가지므로 직장과 함께 분류하였다.

88.6%(70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원사건 성폭력은 직장 및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이 30.4%(24건)로 가장 많은데, 이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역고소피해를입는 사례 중 다수가 직장 및 공동체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직장 및 공동체 내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거나 사법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때 자신의 지위나 명예 등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역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대응을 위축시키고 있음을알수 있다.

### 3) 역고소피해의 유형과 피해자 · 가해자 관계

### 〈표 7〉 역고소피해 유형(N=79, 중복)

단위: 건(%)

	무고(검사 인지)	무고(가해자)	명예훼손	공갈	위증	민사상손해배상	기타
빈도	11	22	33	4	1	10	19
백분율	13,9	27.8	41.8	5.1	1.3	12.7	24.1

최근 성폭력역고소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족·지인 및 지원자를 고소하거나, 가해자의 주변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을 고소하는 행위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한 가지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역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이 동시에 역고소를 당하는 방식으로 역고소피해가 파생되다

역고소피해의 유형은 명예훼손⁹(41.8%), 가해자에 의한 무고¹⁰(27.8%), 검사인

^{9) 「}형법」제3072(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 무고(13.9%), 기타(24.1%%), 민사상 손해배상¹¹(12.7%), 공갈¹²(5.1%), 위증¹³(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 역고소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함에 있어 가장 용이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해결방법 중 하나로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고 공론화만 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명예훼손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오히려 성폭력 입증의 법적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있다. 명예훼손 역고소 조사 시 성폭력 발생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행법상으로 가해자의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다.

가해자에 의한 무고 역시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원래의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고로 고소 또는 기소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보다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기 위해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인지에 의한 무고 역시 적지 않은데, 피해자는 법의 도움을 얻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성폭력을 고소하지만, 오히려 수사관의 왜곡된 통념으로 인해 무고혐의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1건의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역고소 중복피해가 파생된 사례, 즉,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역고소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이 가해자나 가해자 주변인으로부터 동시에 역고소피해를 입는 사례는 총 16건이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고소하거나 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1)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langle$ 개정 2014, 12, 30, $\rangle$ 

¹²) 「형법」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angle$ 개정 1995, 12, 29,  $\langle$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¹³)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79건의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역고소 사례는 총 100건으로, 아래에서는 각 역고소 사례들을 분석하여 연도별 역고소 유형, 역고소 피해자별 역고소 피해유형, 역고소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표 8) 연도별 역고소 유형

단위: 건, %

		역고소 유형										
	전체	무고 (검사인지)	무고 (가해자)	명예훼손	공갈	위증	민사상 손해배상	기타				
전체	100 (100.0)	11 (11.0)	22 (22.0)	33 (33.0)	4 (4.0)	1 (1.0)	10 (10.0)	19 (19.0)				
2010	1 (100.0)	-	-	_	_	-	1 (100.0)	-				
2012	6 (100.0)	-	2 (33.3)	1 (16.7)	_	1 (16.7)	2 (33.3)	-				
2013	11 (100.0)	1 (9.1)	4 (36.4)	2 (18.2)	1 (9.1)	-	1 (9.1)	2 (18.2)				
2014	9 (100.0)	4 (44.4)	-	2 (22.2)	1 (11.1)	-	-	2 (22.2)				
2015	10 (100.0)	1 (10.0)	2 (20.0)	2 (20.0)	-	-	1 (10.0)	4 (40.0)				
2016	19 (100.0)	-	7 (36.8)	7 (36.8)	1 (5.3)	-	-	4 (21.1)				
2017	34 (100.0)	5 (14.7)	3 (8.8)	14 (41.2)	1 (2.9)	-	5 (14.7)	6 (17.6)				
2018 (5월 기준)	10 (100.0)	-	4 (40.0)	5 (50.0)	-	-	-	1 (10.0)				

《표 8》은 역고소 사례 총 100건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역고소는 성폭력 사건에 따라서 파생되는 시점이 다르고 또 상담지원을 요청 하는 시점도 제각기이기 때문에 상담일지를 통해 역고소의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최초상담일자를 기준으로 정렬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상담 및 사건지원을 받은 지속사례까지 포함되어 2010년 및 2012년의 최초상담사례도 포함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역고소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에 역고소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의 역고소 사례 중에서도 명예훼손 역고소가 41.2%(14건)을 차지하는데 이는 2016년 이후 'ㅇㅇ계 내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분야의 성폭력들이 폭로되고 공론화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9〉 역고소 피해자별 역고소 피해유형

단위: 건(%)

			역고소 유형											
		전체	무고 (검사인지)	무고 (가해자)	명예 훼손	공갈	위증	민사상 손해배상	기타					
	전체	100 (100.0)	11 (11.0)	22 (22.0)	34 (34.0)	4 (4.0)	1 (1.0)	10 (10.0)	18 (18.0)					
	본인	86 (100.0)	11 (12.8)	22 (25.6)	26 (30.2)	3 (3.5)	1 (1.2)	7 (8.1)	16 (18.6)					
역고소	가족	4 (100.0)	_	-	2 (50.0)	1 (25.0)	-	1 (25.0)	-					
피해자	가족 외 지인	4 (100.0)	-	-	1 (25.0)	-	-	1 (25.0)	2 (50.0)					
	지원자	5 (100.0)	_	-	4 (80.0)	ı	-	1 (20.0)	-					
	기타	1 (100.0)	_	-	1 (100.0)	-	-	-	-					

위의 〈표 9〉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이 어떠한 역고소피해를 입었는지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본인이 입는 역고소피해가 전체의 86%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역시 명예훼손 및 가해자에 의한 무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가족 외 지인, 지원자 등의 주변인은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역고소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사례는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방송 관계자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한 사례였다.

### 〈표 10〉 역고소 피해자와 역고소한 사람/기관의 관계

단위: 건(%)

			역고소한 사람/기관							
		전체	검사	가해자	가해자 가족 및 지인	기타 (회사 등)				
	전체	100 (100.0)	13 (13.0)	80 (80.0)	3 (3.0)	4 (4.0)				
	본인	86 (100.0)	13 (15.1)	67 (77.9)	3 (3.5)	3 (3.5)				
역고소	가족	4 (100.0)	-	3 (75.0)	_	1 (25.0)				
피해자	가족 외 지인	4 (100.0)	-	4 (100.0)	_	-				
	지원자	5 (100.0)	-	5 (100.0)	-	-				
	기타	1 (100.0)	-	1 (100.0)	-	-				

《표 10》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이 어떤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역고소피해를 입었는지 나타낸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한 사례가 대부분이나 검사가 성폭력피해를 무고로 판단하여 기소한 사례나 가해자의 주변인에 의한 역고소피해 역시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가해자가 기혼인 경우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강간이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다른 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혹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이것을 외부에 공론화할 경우 회사에서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가족 외 지인, 지원자 등 피해자의 주변인 등을 역고소한 사례 역시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¹⁴⁾ 이글에서 역고소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주로 성폭력상담의 특성상 1회성 상담의 경우 피해자가 다시 상담소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 한 추후 결과를 추적하기 어렵고, 지속지원 사례의 경우라도 피해자가 더 이상 지원을 원하 지 않을 경우 역고소 사건의 법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역고소피해 수치를 통해 역고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아래에서는 1년간의 상담사례를 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가해자들이 어떠한 용도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가해자에게 역고소는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역고소피해를 입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성폭력역고소의 특징과 조건(2017.6~2018.5)¹⁵

### 1) 가해자의 출구 전략으로서 역고소 위협 및 역고소

### (1) 신고, 공론화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 막기

현재「형법」제307조(명예훼손)으로 인해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 온라인 등에 공론할 경우 가해자는 이 법을 근거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일지에서 "가해자가 학생회장 후보로 나와서 피해사실을 대자보로 게시하였는데,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받았다. 〈사례 41〉"거나 "페이스북에 2년 전 직장 내에서 겪은 성희롱을 알렸는데, 가해자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하더니 고소하겠다며 삭제하라고 협박했다. 〈사례 63〉"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상담소들에서 진행하는 변호사 상담이나 법적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또한 "회사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알리려고 공론화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사례 27〉"는 경우처럼 위협을 넘어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사례들의 특징은 가해자가 해당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

¹⁵⁾ 이 장은 본 연구소에서 2018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나, 피해자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경우들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하며, 반성하지않는 가해자가 공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말하기를 결심하지만, 반대로 이들은 그만큼의 권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역고소를 감행한다. 특히 위 사례들처럼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사법적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데, 이는 현재 명예훼손죄가 성폭력가해자들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그러나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는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위법성의 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실성, 상당성(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위, 공익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박선영, 2007). 또한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도3191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도 인정[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배상균, 2018, 재인용)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사실을 적시한 것은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성폭력 피해경험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비방할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위한 공익성이 강하므로 유죄로 판결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전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들까지역고소한다. 〈사례 43〉의 경우 "친구가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피해자 동의하에 SNS에 관련한 글을 게시했는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례 56〉"거나, "종교단체 대표가 성추행해서 엄마와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가 엄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사례 13〉"한 사례도 있다.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엄마까지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강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엄마를 보면서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소의 주체는 가해자 당사자를 넘어 가해자 주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10년 전 피해 이후 계속 힘들다가 몸이 회복된 후 가해자 회사의 팀장에게 사실을 전달하면서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더니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사과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주는지. <사례 70>

위 사례에서 성폭력가해자의 가해사실은 그 소속기관의 명예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역고소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다.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주변인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공론화나 고소를 결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의 사례들처럼 "사과"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발언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을 요구하는 발언이고, 사과하면 신고·고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는 피해자는 신고·고소 이전에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가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요구한 '사실의 인정'을 '협박'으로 전유하여 역고소의 빌미로 삼고 있다

직장상사로부터 준강간, 추행 피해가 있어서 고소 진행 중인데, 가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니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었다. <사례 29>

위〈사례 29〉는 금전적 손해배상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심사하지만, 「민법」의 경우 특칙 764조 16만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박선영, 2003).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가해자들은 가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노력을 하기보다,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화'하면서 법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점이다. 가해자들은 '가해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느끼며 가해자 정체성에 저항하는데 이러한 저항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다(김보화, 2011). 위의 사례들처럼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 이전에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하기를 결심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사법적 위협이라고 했을 때,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피해자의 위치는 흔들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 (2) 법·제도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형사·사법 절차 안으로 가져왔을 때, 피해자의 법·제도적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례 4〉에서 "가해자는 공판에서는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하고 뒤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언급처럼 역고소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료법률지원한 역고소 사건을 보면 전체 79건 중 무고죄가 46건(58.23%)으로 제일 많았고, 명예훼손이 11건(13.92%), 손해배상 청구가 10건, 다음으로 위증이 5건으로 보고되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6) 위증죄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선서 후 거짓

¹⁶⁾ 제764조(명예훼손의 정우의 특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을 증언했다면서 역고소하는 경우인데, 〈사례 4〉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진숙을 모두 불신하게 만들려는 가해자의 전략 중 하나이다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에는 합의 시 성폭력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 주변인, 경·검찰 등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혹은 역고소에 대한 협박의 용도로 합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자친구의 성폭력을 고소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동시에 고소했다. 너무 힘들었다. 〈사례 30〉"의경우처럼 역고소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와 기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간으로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이 너무 취해있었고, 가해자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무고죄로 꽃뱀으로 몰릴 것 같다. 그냥 강간 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가. <사례 39>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만취한 상황에서 성폭력피해를 입고 바로 고소하였지만,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스스로의 피해를 부정해야 할 상황이 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사례의 "무서워서"라는 표현과 같이 피해 직후의 감정으로 피해임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시에 성적관계를 원했다면 "무섭다"는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불안감은 더 강화될 것이고 "강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 후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의 법적 대응 과정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스스로 피해가 아니라고 해야 더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에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고소를 취하하러 가면서 주변인으로부터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폭력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무고죄로 조사를 받았고 유죄판결 받고 구속되었다. 너무 힘들어서 항고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례 3>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고소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협박을 받아 고소취하를 결심하지만, 그것이 성폭력이 아님을 인정하거나 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은 현재 법원이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최협의설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인데, 실제 성폭력피해자의 경험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맥락, 피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의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성폭력을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구속까지 된 후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기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역고소를 활용한 가해자의 공격과 위협은 피해자의 법적 대응과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3) 피해자에 대한 보복

성폭력가해자들의 역고소는 피해자의 공론화나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세도우핀즈(2016)는 "SP-01 :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에서 가해자의 각종 역고소를 '보복성 고소'로 명시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자에 대한 위협, 위축, 무력화와 함께 자신을 곤란에 빠뜨린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례 22》의 경우 직장상사에 의해 성추행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고소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본인의 고소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해자만 무고로 고소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례 37》은 성폭력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후에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가해자는 그간에 주었던 선물을 받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합의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일주일 만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합의한 내용을 무고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성 괴롭힘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는 무고뿐 아니라 다양한 죄목으로도 나타난다

가해자와는 데이트 관계였는데 이전에 입었던 성폭력피해를 털어놓자 그 이후부터 이사실을 이용한 욕설과 협박이 시작되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후 가해자가 사정해서 합의문을 제출하였는데 태도가 돌변하여 차가 흔들려서 손을 잡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였다. <사례 28>

위〈사례 28〉은 이전 성폭력 피해경험을 알게 된 가해자의 괴롭힘을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억지 고소'한 사례이다. 이는 피해자의 이전 피해경험을 '걸레'와 같은 표현으로 비난했던 언 어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강간했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학과 특성상 계속 공동작업을 해야 해서 학교 교수님한테 말했 더니 자퇴하겠다던 가해자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 다. <사례 35>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피해 이후 가해자가 뭘 원하냐고 해서 지나가는 말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가해자와 공동작업이 어려워 학과 교수님께 알린 것을 이유로 공갈과 명예훼손의 역고소를 당하는데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에 계속 사과하며 자퇴하겠다던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적지 않은데, 이때 자신이 이전에 했던 사과는 공갈·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바뀌게 된다. 지난 10년간 성폭력 고소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기소율과 구속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17 성폭력 고소인이 많아졌다는 것은 피고소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성폭력역고소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가해자들의 보복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럼 보수적인 해석과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일부 법인들은 가해자중심적인 조력을 통해 새로운 이윤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2) 성폭력역고소가 위협되고 실현되는 조건

#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¹⁷⁾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에 인구 10만 명 당 29.1건이었는데 2016년 56.8건으로 늘어나, 10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대검찰청, 2017), 이는 성폭력 사건 발생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반면 2016년 「경찰범죄통계」에서 드러나듯이 강간의 불구속율은 91.2%에 이르고, 불기소율은 47.4%로 절반에 가까워(경찰청, 2017), 대중의 높아지는 감수성에 비해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담일지에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무고 경험은 위의 판례와 달리 허위사실도 없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음에도 무고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 다. 〈사례 7〉에서 피해자는 학원 선생에게 성폭력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이후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 받은 것과 남자친구가 항의한 내용 등에 대해 검사는 "기본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무고를 의심했다.

성폭력역고소 중에서 무고죄는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가해자로부터 고소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한국 성폭력위기센터(2016)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79건의 역고소 중 무고의 경우 검사의 고소는 22건(27.85%), 가해자의 고소는 24건(30.38%)이었는데, 고소 결과를 보면 검사가 고소한 10건 중 8건이 무고 유죄판결을 받았고, 1건이 무죄, 1건이 중단이었다. 반면 가해자가 고소한 21건 중에서는 3건만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5건이 무죄, 3건이 합의였다. 이는 검사의 무고 인지 고소가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기소처분시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는데,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현격히 다른 특성이 많음에도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권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기본상식으로 이해가가지 않는"다며 무고를 의심하는 상황은 수사 담당자들이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며, 피해 순간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야 할 뿐 아니라.

사력을 다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쳐야 한다는, 소위 '성폭력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생각하는 "기본상식"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와 피해 직후 태도에 대한 수사관들의 의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사례 22〉의 경우 무고로 고소된 후 거짓말탐지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와 곤란하게 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46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불리한 검사결과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정황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판단하는 수사관에게 이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다.

물론 수사관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도 될만큼 충분한 수사가이루어졌는지, 가해자도이 조사를 받았는지, 피해자가 해당검사에 적합한 심신상태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검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염려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한국여성의전화, 2017), 이러한심리상태로 인해 불리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CCTV 등의 효력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다룰 때도 의심받는다.

준강간피해 후 고소했지만 가해자와 좋게 나누었던 카톡 내용과 술이 취한 것 같지 않게 나온 CCTV 화면 때문인지 검사가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했다.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 하면 양형기준에 참고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썼다. <사례 34>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나고, 무고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CCTV에서 저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당시 가해자보다 내가 많이 취해있어 가해자의 진술이 CCTV 내용과 더 일치했다. 그래서 검사가 저의 진술을 의심하게 된 것 같다. <사례 40>

《사례 34》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CCTV에서 "취한 것 같지 않게" 나온 것을 무고 인지의 이유로 삼았는데, 본인은 술에 취했으나 타인이 보기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는 '블랙아웃(Black-out)'이라고 불리우며, 만취 중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먼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이윤정 외, 2017). 블랙아웃은 대학생의 50.3%가 1년에 2회 경험하였고, 26%가 6개월에 2회 경험하였다(김광활외, 2011)고 보고될 만큼 광범위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취하지 않았으면서 취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술에 취한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검사의 오해와 이로 인한합의 종용은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반면 〈사례 40〉에서 검사는 CCTV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가해자보다 많이 취해 있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보았다. 통상 술에 덜 취한 사람의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 검사는 가해자가 어떻게 취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였는 지를 조사하기보다 CCTV와 진술이 더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다. 여기에서 CCTV라는 증거자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CCTV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18, 「형사소송규칙」

¹⁸⁾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③검사 이외의 수 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도난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인 메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

제134조의 8¹⁹에 의해 비진술증거로서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효력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위사례들처럼 피해 당시의 녹화물이 아닌 피해 전, 후 CCTV에 보이는 뚜렷하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무고를 인지하는 것은 성폭력이 폭행·협박 없이술을 먹은 상태나,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모텔에 함께간 것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²⁰에서 마련한 무고 기소의 요건은 '철저한 수사의 완료', '수사결과에 기반한 증거제시', '피해자 행동 및 반응으로 무고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이고, 이 세 가지 요건은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하만숙, 2017). 그러나 위 사례들처럼 검사에게 무고로 인지되거나 기소되는 피해자들은 거짓말탐지조사, 술에 취한 정도, CCTV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위협받고 무고를 의심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과 정확한 기억,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모순된 기대들이 존재함을 알게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일 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관이 관련된 증거를 다루고 해석하는 방식은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수사관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당다.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¹⁹⁾ 제134조 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녹음·녹화태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②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 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병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²⁰⁾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893년 설립된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대상 교육훈련 자료와 범죄 수사 및 조사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보급해왔으며, 특히 성범죄사건의 수사 및 피해 자 조사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성인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 역시 회원국이다.

### (2)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와 피해자 책임론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범죄의 형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이끌어내려는 가해자의 동기가 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9 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담일지를 분석한 장다혜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합의 제안이 있었던 283건 중, 194건(64.7%)이 가해자 측에 의한 것이었다(85대 해, 2012).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합의나 보상, 때로는 여성단체에 대한 후원이 가해자에게 감형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에²¹ 여전히 가해자, 가해자 변호인이나 때로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선택할수 있는 권리이나 형사고소 이전 보상의 요구는 가해자로부터 공갈, 협박 등의역고소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전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강간했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 학과 특성상 계속 공동작업을 해야 해서 학교 교수님한테 말했 더니 자퇴하겠다던 가해자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 다. <사례 35>

앞에도 언급한 바 있는 위 사례는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후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통상 성폭력피해를 입으면 바로 경찰 고소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상황과 위 치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서 성 인의 경우 타인에 의한 피해가 69.5%(15,214건)로 보고되는 것에 반해, 2017년 전 국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서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4.6%, 2018년 상반기 의 경우 11.5%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사고

^{21) 2017}년 9월 14일자, 오마이뉴스,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이건 반성 아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즉, 모르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타인의 위치, 피해 이후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장, 데이트 관계, 학교 등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일 경우 고소 이후 불이익이나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아는 사이에서의 신고·고소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쉽게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다른 해결방안이나 상담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전에 개인적 해결방안으로서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 피 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사과의 의미로 요구되지만, 위 사례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갈, 명예훼손, 협박 등 으로 역고소하거나, 하겠다는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간 수사관들이나 언론 등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합의에 대해 유독 경직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피해자의 조건과 결합할 때 피해회복의 내용은 사적 영역에 방치되고,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에서와 달리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장다혜, 2012). 그러나 위 사례처럼 형사고소 전에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먼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인식에서 기인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소위 '꽃뱀'이 아닌지에 대한 수사관의 의심에서 비롯된다.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추행을 했다. 가해자가 때릴까봐 무서워서 바로 신고를 못했고 이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돈을 못 받는 것은 사장이고 당한 것은 나인데 경찰이 대뜸 돈을 못 받아서 신고하는 것 같다고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고했다. <사례 46>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 성폭력을 당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바로 고소는 못했지만, 이후에 고소했으나 성폭력은 불기소되었고,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였다. 재판 중에 검 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물으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고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1>

위 사례의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었고,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불평등한 위치 속에서 "가해자가 때릴까 봐", "가해자가 무서워서" 바로 고소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돈을 못 받아서", "돈을 주지 않아서" 고소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피해가 '객관적인 피해'로서 인정받기 위함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심 및 비난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분열된 인격의 통합성회복을 위해서 고소를 결심하기도 하는 것이다(김샛별, 2009).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돈"이 개입되는 순간, 피해자의 피해경험은 위기를 맞게 되고, 국면이 전환되면서 왜 성폭력피해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 때문에 신고한 것이아닌지를 항변해야 하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또한 〈사례 1〉에서 검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묻는데, 성폭력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성폭력은 신체적, 물리적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무서움, 혼란,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알려졌을 때 맞딱드려야 할 수많은 것들까지를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성폭력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들을 무시한 채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성폭력을 성기 삽입을 중심으로 한 '정조'와 '순결'에 대한 문제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편견, 도망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가해자와 수사관의 인식은 어디에도 없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다운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확상에서 강화되고 있다.

### 4. 제언

### 1) 수사 ·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 권리보장

현재 성폭력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에 제시된 피해자 권리보장제도²²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성폭력역고소 피의자가 되는 순간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없어 수사과정과 각종 공문서에 실명이 노출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할 수 없다. 또한 무고와 명예훼손의 경우 먼저 성폭력 사실 여부에 관한조사를 해야 함에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팀 등에서 남자 경찰에 의해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역고소의 경우 성폭력 수사에 훈련된 여청계에서 조사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는 가족, 주변인들에게도 역고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 주변인들에 대한 역고소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대검찰청에서는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담당 수사관마다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원 과 정에서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다. 즉, 성폭력 수사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을 받았을 때까지인지,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 기각된 때까지인지, 재정신청을

^{22) -}수사·재판 단계: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 구조),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 사할 권리, 처분결과를 알 권리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진술할 권리,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재판이후 단계: 선고 결과를 알 권리, 카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해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한 결과가 나온 때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수사매뉴얼의 정확한 개념 규정과 더불어 각 검찰청에서의 실행여부가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방패법(Rape Shield Law)²³이나 IACP의 수사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훈련하여, 피해자들이 역고소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達기소처분)의 4항에서는"「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성폭력역고소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

²³⁾ 미국 연방 증거법 412조(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412)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rape shield)규 정이라고 불리며,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불리한 증거를 배제할 수 있을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성적 위법행위와 관련사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거의 성적 행위(Sexual behavior)나 성적 성향(Sexual predisposition)에 관한 증거를 배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의 성적 행위단 실체 육체적 성관계, 성접촉 또는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모든 과 거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적 성향이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안급하지 않지만 이를 암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른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과 성향이 행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고소전력을 문제 삼는 것 또한 판례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고미경(2016), "성폭력 피해자가 괴소된 사건에서의 법적 지원",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56쪽,

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은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적 의도가 의심될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다.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의 경우 특히 소송제기자가 패소판결을 받았으면 서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론화된 사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박선영, 200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 및상당성에 대한 판단은 성폭력피해 진술의 진실성 또는 신빙성 판단 기준을 강간 등의 유죄입증을 위한 판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적시된 성폭력 사건의결과가 불기소 내지 무죄판단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의 진실성 판단과 분리해야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기소 내지 무죄판결 이후 성폭력피해를 주장한 이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의 남용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시 무고 인지를 워칙으로 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다(장임다혜, 2018).

더불어 고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남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주관적 요건은 상대에게 오로지 고통을 줄목적,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꾀할 목적, 협박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 이념의 고려와 이익형량에 의한 고려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고소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세한 사항을 「형사소송규칙」에 담거나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고소 남용은 대외적 효력으로서 국민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에 대한 근거가 있는이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규칙 내에 포섭할 수 있다(김혜경, 2017).

### 3)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2018년 3월 8일,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중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 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수사·재판 담당자들에게 어떤 지침 등을 통해 공유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적 개선안들이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부 지침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있고, 이것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설득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한 가지 대안으로는 「형법」제3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① 제301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범위를 넓히고, ②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의 조화를 도모를 고민해볼 수있다(배상균, 2018). 더불어 현재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취)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가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공론화로 인한 명예훼손 역고소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있도록 수사·재판 담당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역고소 관련 상담일지에 대한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성폭력역고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해자들이 어떠한 용도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가해자에게 역고소는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역고소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친고죄 폐지가 시행된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성폭력역고소 피해를 입은 사례 79건(374회)를 대상으로 상담횟수,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성 별·연령, 가해자의 성별·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의 유형, 역고 소의 유형, 역고소를 행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양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역고소 역시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며, 남성가해자가 여성피해자 및 그 주변인을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분석대상 사례 중 남성가해자에 의한 남성피해자 역고소 사례도 1건 있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역고소피해가 파생된 성폭력 사건은 직장 및 공동체 내의 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39건, 29.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장 및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드러나거나 사법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때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일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하여, 역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역고소는 가해자가 명예훼손 혹은 무고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역고 소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법적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선 택하지 않고 사건을 공론화한 경우나 혹은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나고 가해자 가 유죄인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수단이며, 무고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 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가해자가 받 는 불이익이 없다. 또한 사례 수 자체는 적더라도 가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지원자 등을 역고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담일지 사례의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간 상담일지 79건(259회)이다. 분석대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피해를 입었거나, 역고소 위협·협박을 받은 경우, 또한 역고소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하며 대응방법을 물었던 사례들이었고, 특히 실제 역고소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위협, 협박을 받거나 이를 우려하는 것까지 포함함으로써 역고소에 대한 우려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먼저 성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이 성폭력 사실을 알렸을 때 발생하는 역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막고,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흔드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형사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의지와 사법적 처벌에 대한 기대를 무력화시키며,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폭력역고소가 위협되고 실현되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수사과 정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자는 거짓말탐지조사, 술에 취한 정도, CCTV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위협받고 가해자와 검사로부터 무고를 의심받거나 실제로 고소당하기도한다. 또한 수사관이 피해자의 직업, 피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편견이 있을 경우 역고소가 실현되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언론의 보도방식과도관련이 있는데, 성폭력 무혐의와 무고를 혼동하거나 전체 무고 사건을 성폭력무고 사건인 것처럼 설명하는 보도들은 2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확장시키는 배경이 된다

^{24) 2013}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914/57653677/1; 2017년 12월 7일자, MBN 뉴스초점, 앞의 기사, 2016년 7월 28일자, 서울신문, 앞의 기사 참고,

반면 최근 '미투운동'에서처럼 피해자나 주변인이 성폭력 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²⁵ 이치럼 한국사회에서 성담론을 공론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억지소송'은 또 다른 피해를 확장하므로 부당제소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부당제소에 대해 법원은 소의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판결 1996.5.10. 선고95다45897 판결; 1994.9.9. 선고 93다50116 판결]고 보고 있다(박선영, 2007). 따라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해행위가 알려졌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기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한국의 '미투운동'은 그간에 성폭력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말해도 정당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못했던 사건들의 임계치가 폭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의 말하기는 성폭력이 개인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적인 말하기를 사법절차를 이용한 보복으로 되갚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성폭력에서 역고 소피해까지 이르는 긴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의 현황과 피해자의 경험을 맥락 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향후 피해자의 관점이 반영된 성폭력과 성폭력역고 소에 대한 해석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²⁵⁾ 피해자(성폭력가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범점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전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바망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4,29, 선교 2003도2138 판결] 참고,

### | 참고문헌 |

- 경찰청(2017), 『2016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 김광환 외(2011), "일개 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실태- 일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2권 11호,
- 김보화(2011),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 구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샛별(2009),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2017),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5권 1호.
- 대검찰청(2018), 『2017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선영(2003), "성폭력 사실의 공론화와 명예훼손", 법조협회, 『法曹』, 제52권 7호.
- 박선영(2007), "법여성학 관점에서 본 성폭력과 명예훼손",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서울: 푸른사상사.
- 배상균(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9권 3호.
- 셰도우핀즈(2016),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정 대응 안내서』.
-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 문.
- 이윤정 외(2017), "알코올사용장애자의 블랙아웃(Black-out)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제18권 2호.
- 장다혜(2012),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임다혜(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전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주최,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다: 의심에서 지지로, 자료집 발표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한국여성의전화(2017), 『성폭력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6), "성폭력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에서의 법적지원",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여성가족부.
-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2018),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8.
- 2013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914/57653677/1
- 2016년 7월 28일자, 서울신문,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csi dx622600fffdc5e7bb5752b3a2108228b
- 2017년 9월 14일자, 오마이뉴스,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나, 이건 반성 아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7년 12월 7일자, MBN 뉴스초점, "사람 죽이는 무고죄", 출처: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328

# 쟁점과 입장

성폭력역고소의 상업화와 '보복성 기획고소' 미투운동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론의 충돌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 성폭력역고소의 상업화와 '보복성 기획고소'¹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소위 '진보진영 내 데이트폭력 사건'들이 폭로되었고, 2016년 문학계, 영화계를 비롯하여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무고' 사건들이 대서특필되면서 "무고는 큰 죄"²라는 시대의 '명언'이 탄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검찰내 성폭력 폭로를 시작으로 방송계, 연극계, 정치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피해경험 말하기, 일명 '미투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극히 일부 사과를 받은 사건도 있지만,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이후 여러 종류의 역고소에 시달리고 있다.³

한국에서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꾸준히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1986년 부천서 성고문 가해자인 문ㅇㅇ과 1993년 서울대 신ㅇㅇ 교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다(조순경, 2002). 2002년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제주여민회와 KBS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100인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죽암휴게소 여성노동자가 직장상사에 의

¹⁾ 이 글은 이 글은 2018년 4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에서 진행한 열린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 성 폭력역고소를 해체하다., "시장으로 간 성폭력: 기획고소의 실체" 발제문과 한국여성연구원의 「여성학논집」, 2018년 제 35집 2호에 탑재된 "부추겨지는 성폭력역고소와 가해자 연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2) 2016}년 7월 17일자, 한겨래신문, "성폭행 혐의 이진욱 '무고는 큰 죄'",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2665,html

^{3) 2018}년 6월 3일자, 한겨레신문, "감기덕, 성폭력 피해 주장 여배우 등 무고죄 고소",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431,html

한 성희롱을 동사무소에 고발했으나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오히려 구속되었다. 또한 경산지역 K대학 K교수, 대구지역 K대학 L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를 사이버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고, D대학 성추행 교수가 피해자를 지지한 여교수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었다(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집부, 2002). 그 이후로도 가해자들의 역고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여성운동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폭력역고소의 문제점들을 알려왔다

그러나 최근 유명인이나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가해사실이 폭로된 가해자들의 역고소들은 무고, 명예훼손을 넘어 모욕, 협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 요구에 응하면 '꽃뱀'이라고 비난받지만, 성폭력역고소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때때로 전과자가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만약역고소 협박으로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도 입고, 금전적으로 '역보상'까지 해야 되는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 가해자들의 연대는 담론상의 연대에 그치지 않고, 대응방법, 조력해줄 변호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단순한 억울함이나 저항을 넘어 점차 '기획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들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 '무혐의, 무죄받아드립니다', '무고 전문' 등의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역고소 건수를 늘려 수임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성폭력 관련 변호를 상업화시키고 있다. ⁴ 이제 성폭력은 '시장화' 되었고, 그 어느 범죄 분야보다 '돈이 되는' 분야로 선호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느슨한 변호사업계의 윤리 규제, 가해자 중심적 사법부의 통념과 '남성연대'의 백래시에서 기인한다. 2018년 5월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대검찰청은 성폭력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이

^{4) 2018}년 9월 15일자, 한겨레신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희가 '구출'해드라겠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96,html 참고

에 대해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운동이 일어나 2018년 5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총 217.143명이 청원하였다 ⁵ 이는 '꽃 뱀' 신화와 '무고하게 고소당한 억울한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섯폭력피해자가 형사고소하거나 피해 사싴을 SNS 등을 통해 폭로한 이후 가해자에게 무고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6 피해를 입고 심지어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지지했던 제3자들 에게 '기획적으로' 고소를 시도하는 이른바 가해자의 '보복성 기획고소'에 주 목하여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누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효과 적으로 막아왔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관련 판례 검토와 함께 역고소 피해경험자 5명과 변호사 2명을 심층 면접하였고 연 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7

〈표 1〉 주사례 - 역고소 피해경험자

사례	현재 연령	성폭력 피해 특성		역고소 피해 특성		
		피해시기	피해유형	피해년도	피해유형	
1	30대	20대	데이트폭력	2015-17년	폭로글 삭제 가처분신청, 민·형사 명예훼손, 모욕, 민사소송	
2	20대	20대	데이트폭력	2015-16년	형사 명예훼손, 모욕, (다른사건) 제3자 모욕	
3	30대	20대	강간, 스토킹 등	2010-11년	형사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위증, 무고	
4	20대	20대	성폭력	2016년	명예훼손 2회	
5	40대	40대	-	2015년	모욕	

^{5) &}quot;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운동,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 청원운동(2018),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 petitions/246489

⁶⁾ 이 글에서 성폭력역고소란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을 고소한 후 가해자 및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 위증 등으로 고소· 기소하거나,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보복성 역고소'로 표현되기도 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여러 건의 역고소와 주변인, 연대자, 제3자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었을 경우를 '보복성 기 획고소'라 명명하였다.

⁷⁾ 연구참여자의 일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과 한국여성의전화(2017)가 발간한 『성폭력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작사업 과정에서 진행한 면접이며,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 (표 2) 보조사례 피해자 지원 변호사

사례	연령	성별	변호사 활동경력
1	40대 초반	여성	10년
2	30대 후반	여성	8년

## 2. 부추겨지는 성폭력역고소들: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된 성폭력

### 1)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 '성범죄 전담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센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광고가 나온다. 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곤란에 처한' 의뢰인이 무혐의, 기소유예가 될수 있었는지 1,867건(2018.10.12.기준)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실명만 지운채로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8 2017년, 한 법무법인에서는 서울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을 예시로 들면서 "부당한 처벌을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라고 광고해 시민의 문제제기로 광고판을 철거한 경우도 있었다. 9 이제 성폭력의 사법적 해결은 수사·재판 담당자들의통념이나 감수성의 문제를 넘어 변호사를 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로 전락하였다

최근 한 3~4년 전만 해도 변호사 광고가 그렇게 적나라하지 않았어요. (중략) 그런데 지금은 정말 블로깅 보고 찾아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중략) 뭐 어떻게 뭐 합의를 해도되는 거구, 아니면 뭐 또 자기가 책임지겠어요 사실은. 그냥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수단이 된 거에요. (중략) 정보 제공도 진짜 희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구. 오히려 '아 이렇게해서 빨리 빨리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식으로

⁸⁾ Yo 법률사무소(2018),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sexu/

^{9) 2017}년 4월 3일자, YTN 뉴스, "성폭행을 무죄로 이끌겠다' 법무법인 광고 논란", 출처: http://www.ytn.co.kr/_ln/0103 201704031624400848

대응을 해야되겠구나'라는 것이 진짜 학습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남초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카페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 대응하는 법 이런 건데. (중략) 거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나 사무장이 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걔들이 아닌 척하면서 답변을 다 해주고, 결국에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영업행위를 카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변호사들도 카페 뭐 200만원 주고 샀다. 잘 나가는 거. 그거 정말 인수해요, 서로서로. <보조사례 2>

성폭력피해자들을 주로 변호해 온 〈보조사례 2〉의 말을 참고하면, 점점 상업화되고 있는 법률 시장 속에서 '성폭력가해자'라는 존재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영업수단'이 되고, 이러한 대응책들은 일반인들에게 "학습"되고있다. 더 나아가 〈보조사례 1〉과〈보조사례 2〉는 최근의 과열된 변호사 시장이 대응을 넘어 역고소가 부추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방어를 넘어 "공격"이진행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역으로 '우리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자', 그러니까 방어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략) 사건을 여러 개로 벌려놓으면 수임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사건별로 수임료 책정을 하니까 사건 불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지금 신고를 할까 말까 고소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과정에서 (중략) 명예훼손이나 공갈, 이런 식으로 선제적 공격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 (중략) 피해자가 소총을 쏜 거에요. '나 피해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처벌 받아봐' 총알 하나 날아오면 여기선 원자폭탄 두 알인 거에요. 근데 이게 가해자 머리에서 안 나오잖아요. 가해자 머리와 가해자 지적능력에서 불가능해요. 그니까 결국 그 지원사격하는 지도를 그려주고 실제 작업을 실행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그게 돈이 목적인 거에요. 그렇게까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총 쏘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원자폭탄을 투하해요.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원자폭탄 값은 가해자에게 받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는. <보조사례 1>

〈보조사례 1〉에 따르면, 가해자 변호인들의 착수금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500만원~30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소년부 송치로 끝날 일도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요구하거나 턱없이 높은 상담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부 변호사 들은 "한 건으로 가능할 사건을 몇 건으로 쪼개서 분쟁을 양산하고, 결과적으 로 더 많은 수임료를 챙기는"이른바 "성폭력이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는 것이다. "돈이 목적인" 변호사에게 역고소의 "재료비"는 가해자에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믿져도 본전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또한 아래 〈보조사례 2〉가 지워한 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대학 교수에게 사실을 말 하자 가해자측은 곳갘·협박 등의 역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 러나 피해자의 성폭력 공론화·신고·고소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협 박의 빌미로 작동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나 변호인들의 말을 믿고 속수 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보통 변호사를 만나고 오면 많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상담을 받고 오면, 그게 일종의 세트로 이렇게 진짜 패키지처럼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성범죄의 피의자가 변 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 피의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응하고 '너도 얘를 공격해야 된다, 무고랑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보통은 얘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하는 애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들 누 구를 만나고 좀 상담을 하고 나서,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느낀 게. 무고죄가 뭔지 특별히 알지 못하는 가해자들이 많아요. <보조사 례 2>

실제로 성폭력 사건 상담 지원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피해 사실 문제제기 후 사 과름 하고 용서름 구했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고·고소 후 돌연 자신이 과 거에 했던 사과와 용서는 공갈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위장'하는 방식이 대 표적이다 10 그렇기에 "사과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니 피해자에게 일단 사

^{10) [}서울고등법원 2017노2773]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5886] 성폭력 무고 판결문들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는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고소된 후 그것이 공갈·협박에 의한 무고라고 읍소하였고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하지 말라"11는 소위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은 가해자들에게 중요한 참 고사항이 되다

### 2) 감형을 위한 법인의 '성공사례' 홍보 전략

지난 2017년 9월 1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의 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겻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 이 아니다"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가해자, 가해자 가족, 심지어 가해자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상담소에 후원금을 입 금하고, 입금 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을 감경해 온 사례들이 있었 다. 형사재판 과정 중 가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량감경은 ①성폭력피해자 가 워치 않는 가해자의 일방적 햇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 ②상담소 및 여섯단 체의 활동을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었다. 이 에 성폭력상담소들을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총 7기관에서 101건이 기 부금을 내겠다고 제안을 받았거나(87건), 납부가 확인되었다(14건), 납부가 확인 된 기부금 중에는 법무법인에서 가해자 명의로 기부한 것을 역추적하여 반환 한 사례로, 변호인이나 사무장이 후원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어 기부하였고. 변호인이 기부문의 및 기부금영수증 즉시 발급 여부 문의한 사 례도 4건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해자의 후원과 기부가 양형을 낮추 는 관행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2014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 건의 재판에서 1심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파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

^{11) 2018}년 3월 4일자, 한겨레신무, "일단 사과하지 마? 기자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 상담기", 출처: http://www.hani. 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11.html#csidx590f0f221768016a3f83eabe760805f

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중 일부]

위의 판결문은 한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성공사례'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성공사례'들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합의 의사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실형을 면하고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고 홍보되고 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고 피해 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 반성, 단체 후원으로 인한 감경 등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12

이처럼 가해자 변호인들은 때로는 '반성'과 '합의 의사', '억지 후원' 등으로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억지 고소'들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의 건수를 늘리고, 역고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면서, 그것들을 '성공사례'라 칭하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 동정론, 최협의설등의 강간문화가 강고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여 집행유예로, 선고유예로, 기소유예로 감형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3' 따라서 이들의 '성공'은이미 '성공적'일 가능성이 큼에도,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변호전략은 점차 더구체성을 띈다. 이때 성폭력가해자 변호업계는 성폭력처럼 보수적인 해석과 판단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틈새시장'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¹²⁾ 이미경(2017),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정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전국성폭력상담소협 의회 기자회견 발표문(2017년 9월 14일), 그 외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기자회견문 중 일부 참고, 2017년 9월 14 일자, 오마이뉴스, "성법적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이건 반성 아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 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¹³⁾ 지난 2018년 4월 6일 진행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조현주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유리한 양형사유로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잘못된 성 인식이 적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조현주(2018),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권력형 성폭력 피해 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발표문(2018,4.3),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여성변호사회, 49쪽 참고, 이처럼 "잘못된 성인식"을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고려하는 재판부의 '성인식'에 대한 후속 보고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3. 성폭력역고소의 '기획' 패턴과 '가해자 연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성폭력가해자 법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것은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각종 고소의 남용으로 '실천'됨으로써 피해자와 주변인의 지지와 대응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공·사를 넘나드는 '가해자 연대'를 통해 그 기반을 강고히 하고 있다.

### 1) 고소남용과 "합의금 장사"

성폭력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각종 고소의 남용이다. 〈사례 1〉은 몇년 전,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을 SNS로 공론화하였다. 공론화 직후에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지만, 가해자는 SNS에 올린 글삭제 가처분신청, 형사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년에 걸쳐 총 5가지의 '보복성 역고소'를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사례 1〉이 쏟아지는 역고소에 대응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례 1〉의 공론화 글을 리트윗, 공유하거나, 본인을 비난하는 류의 글이나 피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쓰거나, 오프라인 상의 대책위원회 등에서 〈사례 1〉을 연대한 제3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실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수백 명을 대상으로 "모욕,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겠다" 며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중재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때로는 무혐의 처분이 날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을 '음해' 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는지에 대한 기술을 SNS 상에서 공유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회'의 방식은 가해자 혼자 진행하기에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5〉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공론화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가해 자를 비난하는 류의 말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된 사례이다. 리트윗 1~2개 월후, 지인이 가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넘겨줬고, 가해자로부터 "사과하고 절차를 밟으시라"는 통보를 받은 후, 또 1~2개월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가해자의 변호사라 는 남성에게 "200만 원에 합의를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제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 씨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냥 고소했다고 해서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분이래요. (중략) 경찰분이 '그분이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고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시더라구요. 내가 혼자 고소당한 게 아니겠구나. (중략)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 정도 발언을 한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타겟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들 각개전투를 벌이겠구나 싶었어요. (중략) (미안하다고 할 마음도 있어서) 합의 장소에서 저를 만났을 때도 그래서 저한테 '어쨌거나 한 번 정도는 조심하십시오'라던가 저한테 멘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갈 길 가시길래, 예상 밖이었죠. <사례 5>

《사례 5〉는 어렴풋이 자신과 같은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을 것을 짐작하게 되지만, 사건을 길게 가고 싶지 않아, 형사조정실에서 100만 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대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었다는 것,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용도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 1〉과 〈사례 5〉를 역고소한 가해자와 법인이 얻은 수익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

¹⁴⁾ 변호사인 〈보조사례 1〉과 〈보조사례 2〉에 따르면, 이전부터 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업체에 연락하여 '대리고소'를 자처한 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하여 무작위 내용증명 발송하여 걸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형태의 "기획 소송"이 있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등 각종 '보복성 기획고소'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형(2017)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고소를 취소해 주는 것을 이른바 "합의금 장사"라고 칭하면서 저작권법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동형(2017),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의 검토", 부산대하고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8권 1호, 253~280쪽 참고,

### 2) 가해자 연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자들을 공격하여 연대를 막는 역고소들은 법인과 의 협업뿐 아니라 강력한 '남성연대', 즉 '가해자 연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 했다

가해자들은 고소를 통해서 뭉치더라구요. (중략) 가해자가 제가 자발적으로 글을 내렸다는 식으로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어요. ++에 자기의 고소 진행 과정을. 그래서 그걸 보고 가해자들에게 연락이 왔고 만났대요. (중략) 제가 제일 먼저 고소를 당했구요, 그리고 *** 피해자 분이 고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 @@@ 피해자 분이 었거든요. 그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구 ○○○이 연대자들이나 제3자들을 고소하고 난 직후에 (다른 가해자가) 똑같은 형태로 제3자들에 대한 고소이야기를 계속해서 SNS에 올리고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를 고소했고, 누가 얼마 받았다 벌금을. 그럼 그 결과 처분서를 스캔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과 ***이 자기의 각각의 계정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니까 이 폭로 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도 이 가해자 연대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 방법을 또 전수를 받은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뒤늦게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연대자들에게 역고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례 1>

가해자 연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법인이나 변호사를 공유하고 고소대상을 비슷하게 공유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폭로를하게 되면, 그 피해자나 연대자나 제3자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자기 리스트를 고소를 해서 똑같이 공유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건에서 끝났는데, 이분하고 연대한 게 끝나서 무혐의로 됐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에요. 봤더니 또 둘은 가해자 연대가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알음알음알음. 그래서 예를 들어 피해자가 또 연대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들끼리 컨택이 되면 서로 이걸 정보를 교환해서 또 고소를 해버리게 되는. (중략) 거의 동일하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특정 단체들을 지적하기 시

작해요. 여성단체 얘기 나오고, 페미들 얘기 나오고. (중략) 이제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조금 더 부각해서 전달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례 3>

위의 사례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이들의 공통된 방법은 연대자들의 리스트, 역고소의 과정과 방법을 공유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조직이 "배후"에 있다거나 자신을 "음해" 하려 한다는 것, 만약에 공론화 후 사과를 한 후라면 "특정 단체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식들이다.

가해자 연대는 이처럼 무수히 촘촘하게 짜여진 '남성연대'의 구조 속에서 실천되며, 이제 개별 가해자는 가해자'들'이 된다. 김보화의 성폭력가해자 연구(2011)에서 가해자들은 성폭력 가해를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억울했다. 징계를 받아서 억울하고, 징계가 높아서 억울하고, 경찰에 고소되어서 억울하고, 술에 취하면 취한대로, 술을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위치는 '억울'해서 '희생양센터'를 만들고 '반페미니스트 연대'를 만드는 것으로 구상된다. 이 글에서의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전유'하여 '피해자화'하는 전략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상황들 속에서 강화되고, 부추겨진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죠 뭐. '어휴 나이도 많은 남자가 뭐 얼마나 뭐 애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수사관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리구 '이게 뭐 헤어지자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진 거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사건을 설명했더니 '그러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서기관도 있었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편이 아니고. <사례 1>

경찰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공론화) 글을 올린 이유가,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페미니스트로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어떤 상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상상 범위 밖의 그런 거라서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사례 2>

경찰이 나중에 보니까 가해자랑 막 뭐.. '형님, 아우',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서 저에게 는 결국 정보도 제대로 전달을 안 해주고 모든 게 배제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송치됐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나중에 가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확인을 하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피해요. 그리고 그제야 문자가 왔어요. <사례 3>

위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시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수사 관들의 오해, 남성가해자들에게 공감하는 담당자들의 언행은 용기를 내어 대 응하고자 한 피해자들을 좌절시킨다.

사실 성폭력범죄자를 잡아야 한다. 꽃뱀을 잡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잡아야 한다면 성폭력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게, 좀 더 죄질이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좀 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이번에 명예훼손 진술하면서 느낀 건데 성폭력 피해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꽃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둘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성폭력이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피해만 서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꽃뱀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좀 이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례 4>

〈사례 4〉는 성폭력을 공론화한 후,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성폭력이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꽃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한다. 물론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 진실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성폭력 피해임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온다. 〈사례 4〉의 말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범죄자와 꽃뱀, 둘 중 하나만 잡아야 한다면 성폭력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공론화하는 성폭력피해의 특징은 가해자와 권력 차이가 커서 개인적, 제도적,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가 대부분이다. 또한 '진짜 꽃뱀'의 목적은 '금전적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한국에서는 '금전적 요구'를 전혀하지 않아도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쉽게 '꽃뱀'으로 인식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 차이나 자원의격차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성·가해자 연대는 단지 개별 간의 연대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강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은 수사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성폭력가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신화들로 인해 대부분 자신이 가해했다고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조사를 해보면, 둘 다 '진실' 반응이 나올 때가 많다고 한다. ¹⁵ 미국의 falserapesociety.com(나중에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뀜)이라는 웹사이트에는 철회되거나 수사가 중단된 강간 신고 사례들과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허위강간신고 문제를 다룬 기사가 소개되어 있다(Raphael, 2017). 한국에서 역시 가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카페¹⁶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지지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법을 알려주는 서적들도 출판되고 있는 형국이다 ¹⁷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역고소로 공격해오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어떤

¹⁵) 2018년 6월 16일, 한국여성하회 춘계하술대회 라운드 테이블, "#Me too, #With you :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중에서 서울동부지검 박은정 부장검사의 발표내용

¹⁶⁾ 대표적으로 네이버카페(2018),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쓴 난처한 남자(성난남자)", https://cafe.naver.com/narutoninetail 등이 있다.

¹⁷⁾ 배송회(2017), 『덫에 걸린 남자들: 위험에 빠진 무고한 남자들을 위한 위기관리솔루션,, 북램. 이 책에서는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예비가해자'들이 참고할만한 법적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 박원경(2015),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 지식공간, 이 책에서는 수사 전 단계부터 수사,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들과 하지 말아야 할 대응들. 더불어 유형별 액션플랜까지 자세하게 담겨있다.

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을 저지르겠다고 암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방어를 넘어, 역고소로 승소했을 때, 그들의 재범은 방치될 것이다. 이때 성폭력역고소는 '이렇게 하면 자신을 곤란에 빠뜨린 여성을 이길 수 있다'는 남성연대의 인증과 확인, 더 나아가 재범에 대한 가해자 연대의 결의의식처럼 보인다

# 3)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무력화하기

성폭력가해자들이 각종 고소를 남용하면서 추구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대응과 주변인들의 지지를 막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받기 원하는 피해자의 기대를 무력화시키며,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서 역고소를 활용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계속 고소를 2개월 단위로 당하니 정신이 없고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는데 가해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루하루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고소를 하는 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연대자들을 알아내서, 신상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서,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니까는 정신을 제가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가해자는 이만큼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니까는 나중에 이걸 제가 다 수습하려니까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일부는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중략) 고소장을 받을 때마다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가해자는 할 수 있는 고소는 저한테 다 한 거에요. 그니까 모든 종류의 보복성 고소는 다한 거죠. <사례 1>

저는 시간을 끌려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문을 받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 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면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고소를 해라', 고소를 하는 거는 일단 공론화가 되고 나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고소는 엄청 길잖아요. 그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미제 사건인 거잖아요. 결론을 모르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게 고소를 당하

는 입장에서는 입이 막히는 거니까 걔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사례 2>

《사례 1》이 덧붙인 말처럼 '보복성 기획고소'는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포감과 지침으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대응과 연대는 어렵고 피해자는 게토화된다. '보복성 고소'의 피해자이자 연대자인 〈사례 3〉은 최근의 이러한 '보복성 기획고소'들이 과거와는 다른 지점을 말한다.

일반에 알려진 기획고소는 악플을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법인이 수 백 명, 수 십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어떻게 소장을 날린 다음에 합의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대량고소들을 기획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 공갈이라던가 이런 식의 적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해자의 기획고소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부분이 있는데, 입을 틀어막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연대의 틀을 막아버리고 피해자가 다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 둘의 기획고소는 약간 성격이다른 것 같아요. 의도가. <사례 3>

《사례 3》의 말대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기획고소'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 고 "연대의 틀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이미 고소당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활동에 제약이 생겨났고, 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워져갔다. 그 과정에서 애초의 성폭력 사건 자체는 소실되고, 법적 분쟁을 통한 피해자의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 3〉은 강간과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7건에 달하는 '보복성 역고소'를 경험하는데, 〈사례 1〉,〈사례 3〉과 같은 방식의 역고소는 그간 범죄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보복범죄의 '공적 버전'으로 보여진다. 18 가해자와 피해

¹⁸⁾ 국회입법처(2013)의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75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가 2013년에는 5배 증가하였다. 보 복범죄란 사전적으로 보복('남이 자기에게 해를 준대로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 하여 복수, 양갚음, 응징이 유사한 용어

자의 권력관계가 강할 때 주로 발생하는 보복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신고한 이후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이루어진다. '감히 니가 나를 건드린 것'에 대한 사적 응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획고 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적인 응징' 과정이자, '공적인 보복 폭력'이다. 사적인 보복범죄에 대한 범죄는 가중 처벌되지만, 공적 인 보복 고소의 남용은 현재 전혀 제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통 념 등으로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성폭력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연대자, 지지자들을 위협하고 압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보복성 역고소', 특히 '보복성 기획고소'에 주목하여, 성폭력가해자 변호업계가 '상업화' 되어 가고 있는 현황과 수법,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기고 지지하는 사회구조적인 '가해자 연대'와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복성 역고소'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고소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역고소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조순경, 2002)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성폭력 사건변호 홍보 및 '패키지화'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 변호사법 개정이 요구되다

특히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2항은 "변호사는 범죄혐의

로 사용됨)이라는 단어와 범죄가 결합된 용어로, 검찰청은 보복범죄에 관하여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나 중인을 상대로 살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범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사회 적 약자에 대한 가해자의 범행유발 책임 전가,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수위 미약, 국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 치 미흡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김홍열(2013), "최근 보복범죄 발생 현황과 시사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회업법조사처 참고.

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박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손창완(2009)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적 품성 및 적합성(moral character and fitness) 요거 13가지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6번째가 사법절차의 남용(abuse of legal process)에 대한 부부이다 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에 도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이름 부추기거나 남용하는 사실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및 협회 차워에서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Abel(2008)은 비햇변호 사들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변호사비를 책정할 때 2차 의견(second opinion)을 받 는 것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성폭력은 법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통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법무법인들 스스로가 자정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가해자는 피 해자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가 상 업화'되어갈 때,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교육연 수에 인권 젠더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추가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항은 사실 피해자에게 이미 내재 되어 있는 힘과 '피해자 연대'로부터 비롯된다.

피해자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글의 연구참여자들은 매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와 재판부에 연락을 취했다. 현재 법조항에 없는 폭력에 대해서는 연구물을 뒤져 자료를 제출하였고, 때로는 본인의 변호사와 논쟁하고 변호사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객관화해가면서 임파워먼트되고 그 힘은 또다른 피해자들과의 비공식적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도 있었고 당사자가 아닌 분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각자의 위치에서 다 피해자에게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중략) 서로서로 어떤 그 연결점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각자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던 피해자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인제 만나면서 아,

이게 출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그 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를 넘어선,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건이 이기면 다 같이 너무 기쁜 거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건이 이긴 것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제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피해경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심리상담을 받고 정신과를 다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저한테 도움이 되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여성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사례 1>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좌절의 시간을 거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힘을 얻어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명명'하며 공론화를 결심한다. 그러나 그후 온갖 역고소들로 인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서로의 연대를 통해 대항의 노하우, 지혜들을 축적하고 더욱 강해진다. 피해자이자 연대자로서, 연대자이자 경험자로서, 전문가로서 이들의 경계는 느슨하며, 당사자의 힘들이 '연대'의 방식으로 만날 때 폭발적 에너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없었다면 좋았을 일이지만, 가해자 개인, 법, 언론, 사회적 담론, 변호사 업계의상업화 등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여성들은 서로의 생존에 연대하며 '아직'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살아있다'.

당신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열이라면 당신한테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백이니까. 그런데 그 열에 대부분 갇혀있거든요. 저도 초반에 그랬고. 근데 인제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이 백이 있으니깐, 그런 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대를 해나가고 우리 잘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례 1>

《사례 1》의 말처럼,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대응을 하는 것도, 침 묵하는 것도, 포기나 체념도, 꼭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어도 된다. 그 모든 것들은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일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통의 경험』(2011)에서 '피해자다움'의 이미지를 넘어 피해경험자가 가진 다양한 힘을 '피해자 리더십'으로 명명하였다. 사건에 대해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경험자라는 것, 피해자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 순간순간 많은 판단과 행동을 이미 해왔다는 것, 상처받아본 사람이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공존에 대한성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 리더십'이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에게 리더십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지지할 수 있을지의 과제는 우리의 몫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소위 '꽃뱀'과 성폭력피해자를 경쟁시키고, '진짜 성폭력'의 검증과 가해자의 명예, 더 구체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가 느꼈을 것이라 '상상'하는 '수치심'의 정도와 가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위치지어 왔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꽃뱀'인가 아닌가, 가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는 왜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가, 한국사회는 동의에 대한 가해자의 '오해'와 '착각'을 얼마나 깊이 지지해왔는가,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누구의 말하기를 더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적 물음이다.

이제 성폭력과 2차 피해의 정의는 각종 보복성 고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운동의 전략 논의와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법의 언어에 매몰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성폭력과 같은 '정치'한 분야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질 때, 성폭력의 의미와 구성, 젠더폭력의 위계와 구조적 폭력에 대해저항할 수 있는 언어들이 사장되기 때문이다. 사법처리 과정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되, 그것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보화(2011),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구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홍열(2013), "최근 보복범죄 발생 현황과 시사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4.9.16). 국회입법조사처.
- 박원경(2015),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 서울: 지식 공간.
- 박은정(2018), "Me too, #With you :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성폭력을 말하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라우드 테이블 발표문(2018.6.16), 한국여성학회.
- 배승희(2017), 『덫에 걸린 남자들 : 위험에 빠진 무고한 남자들을 위한 위기관리솔루션』, 서울: 북 랩.
- 손창완(2009),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 법조협회, 『法曹』, 제58권 7호, 249-277쪽.
- 이동형(2017),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의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8권 1호, 253-280쪽.
- 이미경(2017),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제점", 전국 성폭력상담소혐의회 기자회견 발표문(2017.9.14).
- 조순경(2002),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 성폭력 관련 법 체계와 법 집행에 있어서 의 적극적 조치를 제안하며",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발표 문(2002.10.22), 민변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조현주(2018),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개선점",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발표문(2018.4.3),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여성변호사회.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서울: 이매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한국여성의전화(2017), 『성폭력역고소 피해자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Abel, Richard L.(2008), *Lawyers in the Dock: Learning from Attorney Disciplinary Procedings*, Oxford University Press.
- Raphael, Jody(2013), *Rape Is Rape*, 『강간은 강간이다』, 최다인 옮김, 서울: 글항아리, 2016.
- 2016년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 "성폭행 혐의 이진욱 '무고는 큰 죄'", 출처: http://www.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2665.html
- 2017년 4월 3일자, YTN 뉴스, "'성폭행을 무죄로 이끌겠다'법무법인 광고 논란",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31624400848
- 2017년 9월 14일자, 오마이뉴스,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이건 반성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0102&CMPT CD=P0010&utm source=naver&utm

- 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년 3월 4일자, 한겨레신문, "일단 사과하지 마? 기자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 상담기", 출 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general/834511.html#csidx 590f0f221768016a3f83eabe760805f
- 2018년 6월 3일자, 한겨레신문, "김기덕, 성폭력 피해 주장 여배우 등 무고죄 고소", 출처: http://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431,html
- 2018년 9월 15일자. 한겨레신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저희가 '구출' 해드리겠습니다". 출 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196.html
- 네이버카페(2018),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쓴 난처한 남자(성난남자)", https://cafe.naver. com/narutoninetail(검색일: 2018.12.1).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운동(2018).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 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검색일: 2018.12.1).
- YO 법률사무소(2018),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sexu/(검색일: 2018.10.12).

# 미투<del>운동</del>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론의 충돌

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문제제기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가 미투운동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발에 대한 역고소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대처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원입법발의 역시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후 성폭력 피해사실의 폭로나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유포 등 인격권 침해 행위 역시 비범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다

과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 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앞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내용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보호하고 있는 명예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가 갖는 의미와 효과, 특히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사실적 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내용과 현실

# 1) 명예훼손 법률 및 법체계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 상 명예훼손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다른 법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에도 적용이 되므로, 명예훼손죄의 이해를 위해 우선 형법의 규정을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모두를 명예훼손 행위의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때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사실적시 및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제309조제1항및제2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제시되어 있다. 명예에 관한 죄라는 장의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명예는 인격체로서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명예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1 판례 역시 명예훼손죄를 "사람의

¹⁾ 조소영(2013), "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9 권 1호, 410-411쪽, 형법학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으로서 명예를 외적 명예와 내적 명예, 명예감 정으로 구분한다. 다수설은 사회외부적 가치로서의 외적 명예와 달리 사람의 내부적 인격 가치인 내적 명예는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절대적 가치로서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에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자기의 인격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해케하는 행위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²로 보아,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로 본다.

'사회적', '외적'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는 사회관계에서 외부로 부터 인식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히" 내 지 "출판물에"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의 사회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 지는 표현과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명예에 대한 질적인 평가 없이 '평가' 또는 '가치'라는 중립적인 보호법익을 상정함으로써, 표현 내용이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없이 표현의 결과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 를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역시 인격권과 마찬가지의 기본 권이라는 점에서 형법은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도 다른 사람 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작동에 있어 일종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며 다른 하나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표현을 통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없거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 또는 '허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 명예훼손죄가 진실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경우를 가중적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명예훼손죄 적용의 핵심적인 판단기준 이다

형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명예훼손 관련 죄를 살펴보면, 특정 목적 내지 특정 대상을 규정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맛법은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람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인 명예감정은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외적 명예 역시 주관적 평가이긴 하지만 자기 이외의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가치판단이라는 점에서 침해 또는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다.

²⁾ 대법원 1970.5.26.선고 70도704 판결.

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규정을 두고 매체의 전파가능성 및 보존가능성을 고려 하여 벌금액을 상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대상을 상관으로 특정하여 자신의 상관에 대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하고 있으며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피해자 의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보호법익에는 군대 내 계급질서가 중요한 축임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명예훼손죄 규정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후보자 비방행위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의 목적인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적시인 경우 마찬가지로 공익성 및 진실성이 입증된다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법률과 법체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가중처벌의 요소들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표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진실하고 공익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닌 위법성 판단 내지 가벌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한국의 명예훼손죄 구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는 상징적인 쟁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률에서 삭제된다면, 정당한 표현인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부터 배제됨으로써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명예훼손죄 접수 및 기소현황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명예에 관한 죄 등의 접수 및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명예에 관한

죄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특히 2011년 이후 최근까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 참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외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고려해볼 때,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접수건수의 급증은 스마트폰의 확대 등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개인들이 손쉽게 매체를 활용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간 등 공론 장에서의 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된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2006~2016년간 명예훼손죄 접수건수 및 기소인원 현황

단위: 명

죄명	명예에 관한 죄 (모욕 포함)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연도	접수	기소	%	접수	기소	%	접수	기소	%	접수	기소	%	접수	기소	%
2006	15,893	3,239	20.4	11,791	2,226	18.9	60	10	16.7	1,185	90	7.6	3,412	701	20.5
2007	16,698	4,096	24.5	11,069	2,114	19.1	40	4	10.0	1,193	67	5.6	3,974	844	21.2
2008	18,729	5,992	32.0	10,898	2,259	20.7	42	3	7.1	1,040	92	8.8	3,197	841	26.3
2009	21,641	7,462	34.5	11,603	2,339	20.2	49	4	8.2	966	77	8.0	4,219	1,033	24.5
2010	21,919	7,054	32,2	11,841	2,097	17.7	47	1	2.1	905	96	10,6	4,549	1,065	23.4
2011	25,743	9,236	35.9	12,996	2,900	22,3	75	7	9.3	833	69	8.3	4,758	1,078	22.7
2012	32,404	10,669	32.9	15,622	2,215	14.2	74	6	8.1	838	48	5.7	6,068	1,156	19.1
2013	34,383	11,579	33,7	14,678	2,113	14.4	67	3	4.5	912	46	5.0	7,597	1,233	16.2
2014	45,309	13,352	29.5	14,882	2,063	13.9	172	12	7.0	1,250	48	3.8	8,131	1,111	13.7
2015	56,906	11,495	20.2	16,873	2,108	12.5	175	31	17.7	1,094	42	3.8	10,598	1,174	11,1
2016	56,546	10,957	31,1	17,580	2,086	11.9	90	21	23.3	1,087	34	3.1	13,234	1,334	10.1

출처: 대검찰청(2007-2017), 『검찰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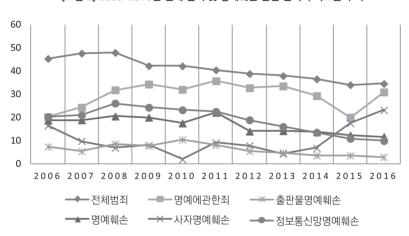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훼손 관련 죄명별 접수건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명예에 관한 죄 관련 고소 및 신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명예훼손 관련 죄명

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M70조)과 형법상 명예훼손(M307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006년 3,412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16년 13,234건으로 287.9%나 증가하여 명예훼손죄의 고소 및 신고의 증가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표현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근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은 언론자유의 쟁점과 연관이 있기보다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쟁점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명예에 대한 죄 관련 고소 및 신고 등이 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범죄와 명예훼손 관련 범죄의 기소율 추세를 비교해보면, 접수된 전체 범죄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3~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모욕죄를 포함한 명예에 관한 죄의 기소율은 등락이 있으나 2~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관련 죄명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사자 명예훼손을 제외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기소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출판물 명예훼손 역시 기소율이 점진적

으로 낮아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관련 기소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접수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건수는 지난 10여년간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증가한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림 2] 2006~2016년 전체 범죄 및 명예훼손 관련 범죄의 기소율 추이

검찰의 통계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고소 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한국의 법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 또는 신고되는 사건들 중에는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배제하고 개인의 명예권 보호를 선택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기소율이 11.9%, 10.1%로 전체 범죄 기소율인 34.7%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명예훼손 적용에 있어 사법기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등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들, 특히 혐오표현이나 사생활 비밀 유포 등에 대한 형사제재 역시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론의 쟁점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예훼손의 보호법익과 법체계의 특징으로 명예훼손죄 로 재판에서 다투는 주된 사례는 결국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 혹은 기관(대표 재 등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가 높은 대삿에 집중되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곳 적인 사안이나 관심사, 공인 3등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행위에 대해 서는 곳익성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비밧목적을 부인하다 형법이 론에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 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성과 진실성 에 대한 판단기준을 나누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판단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실 성과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구성요건의 판단과 뚜렷이 구분되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사실상 진실성과 공익성은 보호받을만한 표현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함으 로써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론화하는 순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법처리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진실성과 공익성의 판단 주체는 사법기 관이고 입증정도에 대한 사실파단 역시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론 장에서 발화한 자는 사법판단에 기대어 불확실한 사법처리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결국 곳론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름 가져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으며⁴ 이는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의에

³⁾ 판례상 인정되는 공인의 개념은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정계사회 지도자, 연예인, 스포츠선주 등으로 범주화된다.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의 경우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09현마747], 류영재(2016),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5권 1호, 69쪽,

⁴⁾ 최근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촉구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2018년 4월 6일자, 이데일리,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888661917

서 제시한 폐지 권고안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론의 주요 근거들과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민주주의 국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이므로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동조 제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내재한 한계이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로 본다.

그러나 진실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는 타인의 명예는 부풀려진 허위의 평가, 즉 '허명'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려는 명예와 인격권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회구성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교환함으로써 공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을 통해 오류를 시정해나가는 민주주의 사회질서의 근간이므로, 정보공개와 교환을 통해 특정인에 대해 공개된 진실에 관한 사회적평가는 올바른 평가를 형성하고 올바른 공론장을 형성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신평, 2004: 313). 그러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국가형벌권을 작동시킴으로써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의 평가를 바로잡는 공론장의 형성에 장애가 되며 민주주의의 실현에 제한이 되므로 폐지해야 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3496&}amp;mediaCodeNo=257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폐지론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현행 형법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합헌결정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그 구제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명예보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위축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5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고소 이후 보호받을 만한 진실하고 공익적인 표현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낙태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 규정이나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의 활용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낙태죄 규정이존재하는 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실을 아는 이의 신고로 언제든 처벌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확산과 위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명예훼손을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사안들이 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론화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실제 명예훼손죄의 적용이공론화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가지는 공론장의 형성 기능과 민주주의 사회 질서의 보장 차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비방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두는 명예훼손죄 역시 진실성과 공익성에 판단을 모두 하고 있고, 실무상 명예훼손 고소가 대부분 허위사실 적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⁵⁾ 헌법재판소 2016,02,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헌공제233호,331]

가 형사사법처리의 두려움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제거하는 실 질적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가 가지는 상 징성으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공론화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실현에 대한 기 대가 확산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이후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공소변경하여 사법처리를 지연하는 관행에 기대어 고소를 남발하는 이들로 인해 진실한 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했던 사법처리가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명예라는 불명확한 범주의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의 법에서 비밀침해 죄 이외에 프라이버시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이희경. 2009: 268), 한편으로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프라이버시권이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명예권의 침해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예권 침해 역시 형사법의 영역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평, 2004: 315).

실제 사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활동이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인의 경우에도 제한적이지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공개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도 하여,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지 않은 민사피해구제로는 낮은 액수의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효과나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우리법체계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형사법에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처벌규정 없이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종사자에 적용되는 금지행위 규정이나 7개인정보보호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2호및 제3호)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완벽히 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생활의 공개가 사회적 평가나 가치의 저하라는 객관적 평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공동체에서 수용되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내지 성적 이력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를 개인의 가치나 그에 대한 평가와 연관하여 인격권으로 보지만, 오직 외부의 가치 내지 평가로 한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인격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 개인의 사생활, 신체적·사회적 특성, 신념 등 인격과 관련된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개인적인 자율성이 타인의 간섭, 방해, 관찰 등으로 침해되는 다양한 인격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 문제이지 현재 명예훼손죄를 통해

⁶⁾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위법하게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 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이를 통하여 지득한 통신·대화내 용을 공개 누설한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없이 제공・활용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타 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23 조. 제42조. 제50조 제1항). 또한 신용정보업 관련 허가를 받은 회사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 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확실하지 않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16조, 제17조 제6항, 제5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 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당해 법률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규정된 범 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4조의 제2항, 제26조 제3항, 제215조 제1항, 제28조의 제2항, 제30조, 제31 조, 제49조, 제71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3조),

제한적으로 수습하는 것은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위한 입법안의 한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내 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관련 입법안 역시 지속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 최근 미투운동의 확대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행위에 대해 명예 훼손의 역고소와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문제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입법안의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입법안은 크게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를 폐지·개정하는 안과 성폭력 등 피해자에 한정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하는 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및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하는 것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09조 제1항,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삭제하는 안.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을 추가하는 안이 있다. ①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안은 폐지론의 입장에 충실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이 안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실 에 대한 공개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인격권에 비해 우선적인 것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 는 안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상 공백이 발생 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②의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방 목적을 추가하는 안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 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하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이다 비방 목적의 추가로 사실의 적 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지 않 으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위해 사실적시 행위의 목적을 피고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의해 그 목적이 비방할 목적임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법적용의 과정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 및 공익성에 대한 행위자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명예훼손 적용범위의 축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시하는 법 륨안의 내용은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 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성폭 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안과 ② 성폭력처벌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배제 특례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법 제70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하는 안이다 ①의 형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안은 ②안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성희롱 사례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실무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고소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제한 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안 모두 성폭력 및 성 희롱 피해사실의 공개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그 외에 다른 진실한 사실 의 공개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해야 하 는 사안을 성폭력 피해에 한정하는 방식의 특별보호입법의 방식을 선택하다 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특별보 호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

인격권 침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논의이며, 명예훼손 법체계의 구조 속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가 사법처리과정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역고소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으로 사법처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 4. 성폭력과 명예훼손의 결합

성폭력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가 쟁점으로 제시된 맥락에는 90년대 반성 폭력운동의 정체적 의제로서 자리잡았던 '성폭력 공론화'가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 공개에서 현재 미투운동으로 이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정치적 의제로서 성폭력 공론화의 실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제로서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기획 되고 이끌어져왔던 공론화와 현재 성폭력 공론화를 이끌어낸 성폭력 피해사 실 공개에는 차이점이 있으며, 명예훼손 역고소로 인한 영향과 피해, 대응방식 역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1) 성폭력 공론화라는 정치적 쟁점과 명예훼손의 결합

성폭력 공론화는 1990년대 이후 반성폭력운동 진영에서 한국사회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정치적 의제이자 운동의 방식이었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성폭력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살인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나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의 적극적인 공론화 활동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고, 대학을 중심으로 학칙이나 자치규약을 통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 사과라는 일종의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원칙의 마련까지 이어졌다. 특히운동사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내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부에서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의 은폐구조의 심각성이 공유되었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와 해당 가해자의 실명을 진보진영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던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의 활동 역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유동이었다.

이렇게 성폭력 공론화가 다양한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역으로 활용했던 방식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고죄, 협박죄, 모욕죄 고소가 빈번했다면 2000년을 전후로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운동조직들을 대상으로 무고에 더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명예훼손죄 활용은 한편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과도 연관되는데, 이전에는 소식지 발송이나 대자보 게시 등 특정 공동체 내부에 한정된 공론화가 더 많았다면 2000년대부터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론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폭력 공론화 운동에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주체는 여성운동조직이다. 여성운동조직은 비록 가해자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주장을 확인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해결된 사건을 공동체에서 공유하여 성폭력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반

성폭력우동이었으며 공론화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는 공동체를 바꾸어나 기기 위한 운동을 공격하는 것으로 의미화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2002년 10월 22일 에 마련되었는데, 이때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 에 알리는 피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성폭력 공론화운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진단하고 성폭력 사건과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공론화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 결과가 비일과적이라고 비판하며 성폭력 공론화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판단에 있어 피해자 관점과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 자 진술에 대한 진실성 및 상당성 인정과 곳론화에 대한 명예훼손적 고의의 부 정 및 공익성 인정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부당고소 및 부 당제소에 대해 제재함 수 있는 구제절차의 마련을 촉구하고(박선영, 2002 : 77-79)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성폭력 가해자/피의자의 명예훼손 소 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제안하였다(조순경, 2002 : 106-108)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조직적 활동은 2005년 4월 29일 대법원 판 례 [2003도2137]로 이어졌는데, 대구여성의전화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 소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내용은 공익의 공적 활 동과 밀접한 내용이며 학내 성폭력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 고. 성폭력 대응을 위한 활동 중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 비상대책위원회 구 성하여 학교에 진삿조사 및 처벌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현행 명예훼손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성폭력 공론화 운동이나 공론화의 원칙에 바탕을 둔 성폭력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와 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공론화와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들도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운동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

⁷⁾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2),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고,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공동대책위원회의행동들 중 일부는 비록 지나치게 과격하였거나 다소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회복, 2차 가해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환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8고 판시한 바 있다.

## 2)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고발이라는 사안해결의 쟁점과 명예훼손의 결합

최근 미투운동이라 명명되는 성폭력 피해의 사회적 고발은 2016년부터 SNS를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사실 말하기의 연장선에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데이트폭력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사실의 공개가 페이스북이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2017년 10월 17일 트위터에서 '#오타쿠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시작으로 문단, 출판계, 영화계, 운동권, 예술학교, 미술계 등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가 확산되었다. 특정 공동체 내에서 명성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권력 내지 선임자로의 지위를 활용한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아닌 권력이 수단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해당 공동체에서 취약한 지위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의 확산은 이러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으로한 명의 가해자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와 연대의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사실과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는 역량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권력이 수단이 되는 성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과 법해석의 한계로 인해 형사

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7. 선고 2016가단5132515 판결.

처벌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개는 피해자가 선 택할 수 있는 제한된 해결방식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운동조 직과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도한 곳론화가 2016년 이후에는 성폭력 곳론화의 주된 방식이 되었으며. 문화예술계의 특정 공동체 내 성폭력을 해결 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요구.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 우돗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의 공론장에서 말 하기의 확산은 동시에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역고소의 역풍을 맞게 되었다. 지 금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SNS라는 매체의 특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고발 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지지와 응원을 표시한 사 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사실 및 가해자 실명을 고발한 내용이 전달되면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명예훼손 고소가 진 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성폭력 공론화가 조직화된 운동조직 에 의해 주도되었던 2000년대와 달리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의 형태이기 때 문에 명예훼손 역고소가 공론화 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2차 피해가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실명공개를 대부분 허위사실 적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가 되어 성폭력 피 해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 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명예훼손 피의자로서 공개되 조사실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사관에게 독립된 조사실에서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 지만, 이는 수사관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 소는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장된 보호조치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 해와 배려 없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과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형

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적 운동차원에서의 성폭력 공론화에 대해서는 대법 원 판례를 통해 공론화 운동의 공익성 인정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 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고발에 대해 진실성과 공 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이 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 중 불기소된 사례들도 있지만, 명예훼 손으로 기소되어 법정싸움을 하게 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 한 명예훼손 역고소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에 대한 피해자 관점의 진실성 판단기준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가지는 공익성 인정 등의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 5. 여성주의 관점에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하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또는 개정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론화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응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고발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사실 적시에서의 명예훼손 적용 제한의 조치는 역고소 제한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명예훼손 고소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신설을 제안하고, 성폭력 피해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수사과정에서의 보호조치를 통한 2차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성폭력 피해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마련

현재 명예훼손 법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고발의 특성을 고려한 성 폭력 피해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적시되 사 실이 객관적으로 짓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뿌만 아니라 그 적시되 사 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 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 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 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 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 결]. 이러한 검사의 허위사실 입증 책임을 고려하여 실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 폭력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해 해당 진술의 사실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행위자의 진실한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특정 인의 특정햇동에 대한 진숨이고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므로, 적시된 성폭력 사실에 대한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 로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에서는 적시된 성폭력 사실의 허위사실 여부는 검사가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 및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성폭력 피해 진술의 진실성 또는 신빙성 판단 기준을 강간 등의 유죄입증을 위한 판단보다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진실성의 판단에 있어 주요

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거나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삿당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진실성과 삿당 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내지 구체적인 자 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섯폭력 피해는 대부분 피 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명 예훼손적 사실의 진실성과 상당성의 입증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를 통해 하게 되다 이때 성폭력 피해 진숩의 진실성 또는 신빙성 파단 기준을 강간 등의 유죄입증을 위한 판단보다는 완화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 각 사유에는 진실성뿐만 아니라 상당성까지 포괄되어 있고 핵심적인 주장 이 외에 부수적인 내용에서의 사실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성 및 상당성의 입증 정도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요. 구할 필요가 없고 합리적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서 자신의 피해가 성폭력 피해 라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시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불기소 내지 무죄판단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의 진실 성 판단과 분리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기소 내지 무죄판결 이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이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의 남용의 피해를 막 을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갖는 사회적 공론화의 효과를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사실 및 가해자 공개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에 성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성폭력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에 대해 대 법원 판례의 공익성 판단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다

# 2) 성폭력 사실적시 관련 명예훼손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

성폭력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수사 시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에 대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성폭력 2차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인 또는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예훼손 피의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법 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용은 가능하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독립된 조사실에서의 피해 진술과 성폭력전담수사관에 의한 피해 진술, 피해 진술시 신뢰관계인 동석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명예훼손 피의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없어 명예훼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명예훼손 피의자 진술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명예훼손 수사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3) 성폭력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고소 불기소처분시 무고죄 적극인지

성폭력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폭력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주변인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폭력 피해 고발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내지 피해자 이외에 다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시 무고 인지를 원칙으로 하여 억제할 필요가 있다.

# 4)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인격권 침해 범죄 유형별 신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화하는 형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성폭력 공론화와 같이 공론장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이다. 실무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보다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많고 사실적시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사

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으로 인해 허위사실의 입증이 실패하는 경우 사실적시로 공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사법처리 지연으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의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로 인한 우려는 사생활의 비밀 폭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실의 적시로 인해 인격권 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생활 및 범죄 이력 등 사생활 비밀침해 및 성별, 장애, 연령, 인종, 국적 등 차별적 요소에 대한 혐오표현 등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인격권 침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대검찰청(2007-2017), 『검찰연감』, 대검찰청.

- 박선영(2002), "법여성학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02.10.22), 민변여성위원회 ·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류영재(2016),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5권 1호, 67-107쪽.
- 신평(2004), 『명예훼손법』, 서울: 청림출판.
- 이희경(2009), "명예훼손죄에 대한 연구-명예보호의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집』, 제13권 2호, 255-270쪽.
- 조소영(2013), "명예훼손 구성 등 인격권 관련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분석",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9권 1호, 409-436쪽.
- 조순경(2002),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 성폭력 관련 법 체계와 법 집행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를 제안하며",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02.10.22), 민변여성위원회·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2018년 4월 6일자, 이데일리,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8886619173496&mediaC odeNo=257

#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선별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의 문제

라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1. 들어가며

2018년 '미투운동'으로 확산된 성폭력피해 고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제도의 개선과정에서 대검찰청은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 을 개정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 더라도 검찰은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책위원회는 2018년 초, 검찰 내 성폭력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 이후, 가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역으로 고소하거나 2차 피해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성폭력피해 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보복'의 형태로 역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권고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이 알려지자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시 무고죄 수사유예 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평등권 침해.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죄 수사유예에 대한 반발적 흐름들¹이 나타나고 있다.

# 2. 성폭력피해의 입막음. 역고소 남용

한국에서의 성폭력 신고율은 2.2%(여성가족부, 2016)에 불과하며, 성폭력은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의 어려움 등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어려워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주변 사람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성폭력피해의 적극적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이지만, 최근에는 성폭력피해 신고 자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고소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폭력역고소란 성폭력가해자가 피소된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 거나, 성폭력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가해자 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더 이상의 문제제 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울림한국여성의전화, 2017)

「형법」제156조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가해자가 취하는 역고소 중의 대다수는 무고죄인데, 2018년 4월 경찰청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통해 취합한 '성폭력역고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0건의

^{1) 2018}년 6월 15일자, 법률방송, "'무고죄 수사 중단' 대검 성폭력수사 매뉴얼, 시행금지 가쳐분 신청제기...국민청원·헌법소원까지, 커지는 반발여론", 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0

역고소가 이루어졌고, 성폭력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무고 가 14건으로 70%에 달했다²

성폭력가해자들이 무고죄를 남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가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고소로 피소되면 성폭력피해자는 피의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복수의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수 없으며, 역고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폭력피해를 진술해야 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윤지명, 2018). 이 때문에 성폭력피해를 겪고도 역고소의 두려움으로 성폭력 사건의 형사·사법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보복의 목적으로 역고소를 남용하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피해자를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고소(김보화, 2018) 하거나 성폭력피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3. 성폭력 무고 사건의 수사과정의 문제

### 1) 수사 중지 '매뉴얼'에 불과한 현실

성폭력가해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성 폭력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무고 수사가 중지된다. 대검찰청은 2018년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성폭력과 관련된 무고 및 명예훼손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성폭력 무고 및 명예훼손이 접수된 경우

^{2) 2018}년 3월 3일자, 서울신문, "3개월 새 성폭력역고소 20건...피해자 압박 소송 거는 가해자",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009024&wlog_tag3=naver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 하도록 했다. 수사 중단이란 고소장은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소환을 비롯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무 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 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및 명 예훼손 수사를 진행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 송치 전까지 역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내 부 가이드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고소된 무고 사건 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가 모두 수사과정으로 이해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는 제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만을 갖는 경우와는 다르다 즉 성폭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동안 무고와 관련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성폭력피해자는 사실상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무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경찰 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때까지 고소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 남용은 그 자체로 성폭력 고소 자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해행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 는 사람이 무고나 명예훼손. 위증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는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해 자들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역고소를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 를 막기 위한 일화으로 악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성폭력피해와 무관한 수사팀 배정문제

성폭력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 해당 사

건은 경찰서 내 경제수사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는데, 경제수사팀은 통상적으로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 범죄 사건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의 명예에 관한 고소사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고발사건 등을 주로 수사하는 팀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임과 동시에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익-개인의 명예, 자유, 재산 내지 법적 안정감 등-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 이해(점은 경, 2017)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팀에서 성폭력 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 신고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전의 성적 경험 등 사적 정보에 대한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 특히 여성다움 혹은 피해자다움과 대립 되는 개인의 경력, 성력, 직업, 그리고 합의금 수령여부를 무고죄의 결정적 단서로 삼고 있는 현실(하면속, 2016)에서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피해자는 무고 피의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폭력가해자의 보복으로서 이루어지는 역고소의 경우 다른 범죄의 무고 사건과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파생된 무고 사건의 경우, 무고혐의에 대한 증거 또한 본 사건인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팀에 서 수사하지 않고 별도의 팀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실무적 고려도 필요하다. 물론 성폭력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전환될 때, 성폭력 수사와 무고 수사가 같은 팀에서 진행하는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팀 내의 담당 수사관을 달리하

### 3) 성폭력피해 고소가 허위사실일 것이라는 수사관의 태도

성폭력역고소에 대한 여러 사법 절차상의 제도 보완과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피해 고소가 허위일 것이라는 수사관의 잘못된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성폭력 무고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전체 성범죄 신고 중 무고로 기소된 비율이나 무고 사범 중 성폭력 무고 사범의 비율, 무고혐의로 접수된 통계도 없다. 경찰, 법무부, 검찰 어디에서도 성폭력 무고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해외 연구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고된 성폭력 사건 중 무고 비율은 약 2~10%정도³이고, 한국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꽃뱀'이 도처에 있어 성폭력가해자로 몰리는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편견은 사회문화적으로 재생산되어 개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에 진행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31.3%가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들은 상대에 대한 분노나 보복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했고(여성가족부, 2016), 경남지역 182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는 질문에 2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이명산양단미, 2011).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무고와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폭력피해 자체가 허위신고일 수 있다는 의심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피해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했는지, 거부의

^{3) 2018}년 7월 10일자, 머니투데이, "성범죄 중 무고가 40%나 된다고?",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610565572974

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피해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연락은 없었는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지 등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진짜' 피해자를 가리는데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같은 피해자는 본적이 없다(하만숙, 2017)'며 가짜 피해자로 둔갑되고 한순간에 무고 피의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기준은 사회에서 만든 성폭력 피해자다움의 모습일 뿐이며 각기 다른 방식과 전략으로 일상의 삶을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즉실재하는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4. 나가며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폭력은 더 쉽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수사의 기초적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더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사하는 과정은 당연하다. 그 누구도 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추궁을 받거나 억울한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역고소가 악용되는 현실에서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서 무고 수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본 사건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무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무고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폭력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자체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과 이로부터 파생된 무고 사건을 담당하는 팀이 성폭력전담 수사팀 내지는 여성청소년계와 경제수사팀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사관이 성폭력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수

성이 부족할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 폭력피해가 허위일 것이라는 언론의 조장, 성폭력 통념에서 기인한 수사관의 의심 또한 수사과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복으로서의 역고소 남용은 성폭력피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년 11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전 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전직 시의원에게 무고혐의를 추가하여 공소를 제기⁴했다. 가해자들의 '무고의 무고'를 인정한 이 사례는 역고소 남용으로 성폭력피해 구제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고죄 역고소 자체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무고 수사과정의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인가,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선별하는 의도적 흐름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효 과는 무엇인가. 성폭력 무고를 둘러싼 쟁점은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4) 2018}년 11월 15일자, 경기매일, "인천지검, '강제추행' 전 시의원에 무고 혐의 추가", 출처: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415

#### | 참고문헌 |

- 김보화(2018), "시장으로 간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의 실체", 『성폭력역고소를 해체하다: 의심에서 지지로, 자료집 방표문, 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2016). 『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윤지영(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법적 개선 방안 모색: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제10권 1호, 175-202쪽.
- 양난미 · 이명신(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성 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159-185쪽
- 정은경(2017),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고피소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여성의전화(2017), 『성폭력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허민숙(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 1-29쪽,
-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1-31쪽.
- 2018년 6월 15일자, 법률방송, "'무고죄 수사 중단'대검 성폭력수사 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제기...국민청원·헌법소원까지, 커지는 반발여론", 출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0
- 2018년 3월 3일자, 서울신문, "3개월 새 성폭력역고소 20건...피해자 압박 소송 거는 가해자",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009024&wlog_tag3=naver
- 2018년 7월 10일자, 머니투데이, "성범죄 중 무고가 40%나 된다고?", 출처: http://news. mt.co.kr/mtview.php?no=2018070610565572974
- 2018년 11월 15일자, 경기매일, "인천지검, '강제추행' 전 시의원에 무고 혐의 추가", 출처: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415

# 기고

안희정성폭력 1심 판결문 비판

문화예술계 성폭력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응지원으로 맞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기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

# 안희정 성폭력 1심 판결 방청기

재판과정의 문제와 쟁점들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 7월 27일, 1심 결심 공판

2018년 7월 27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안희정 전충남지사(이하 안희정)의 성폭력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오전에 피해자 김지은씨¹가 직접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한 날이다. 김지은씨는 그 전 법정에서 16시간동안 증언을 하면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심문을 당해야 했다. 피고인 안희정의변호사는 진술을 왜곡하거나 맥락을 비틀어서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변호인단중한명은 안희정의 열혈 지지자로서 김지은씨가 안희정의 도지사수행업무중에 여러번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김지은씨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일이지만만약에 피고인 안희정에게도마찬가지 심문이 이루어졌다면 그나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안희정은 1심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제대로된 조사한 번 받지 않았다. 7월 27일의 공판은 그래서 더욱중요했다. 드디어 안희정 스스로의 입에서 무슨말을 하는지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오전에 김지은씨의 진술이 있고 난후 휴정을 거쳐 오후가 되었다.

¹⁾ 이 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이유는 본인의 얼굴과 신상을 드러내고 '미투'한 피해자들의 용기와 의미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안희정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갈 수 있을까. 오후 늦게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좀 미뤄야 할까를 고민하던 차였다. 안희정이 일어나 말을 하기시작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재판부와 국민, 충청도민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돕는 변호인단과 여성인권단체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던 전대통령의 사과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아. 아직도 정치적으로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서늘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 말했다.

### 비문의 문맥

"어떻게 지위가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방청객이 술렁였다 '무슨 말이야?'라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갸우뚱하는 풍 경이 펼쳐졌다. "뭐라고?"라며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지위를 가 진 사람이 타인의 인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라는 뜻일까? 아 니면 '어떻게 지위로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라는 문장이었을까? 이 비문(非文)은 꽤나 상징적인 장면이다. 지위는 여기에서 주어로 사용되었다. 지위(地位)는 도달한 자리라는 뜻으로. 이 문맥에서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의 미할 것이다. 도지사라는 지위에서는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일 까? 그러려면 현재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뽑히는 도지사라는 지위는 매우 불안 정하므로 늘 도민들의 심기를 살펴야 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인 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앞뒤 문장이 있었어야 하다. 하지만 안 희정이 한 말은 저것 뿐이었다. 다시 유추해보자, '어떻게 도지사가 타인의 인 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굳이 빼앗을 필요가 없어도 모두 갖다 바 친다는 무의식의 발로였던 걸까?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저런 비문 한 문장으로 끝내버린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평소에 그렇게 달변 으로 유명했던 그가 아닌가 안희정의 비문은 그동안 법정이 얼마나 안희정에 게 안온한 공간이었는지를 드러낸다.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안희정이 진술

의 일관성을 소명하기 위해 16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다면 최후진술에 얼마나 공을 들였겠는가. 그래서였다. 이상할 정도로 짧막한 그의 최후진술을 들으면서 대단히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 8월 14일 1심 선고일²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8월 14일, 1심 공판의 결과가 나왔다. 무죄였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등 모두가 무죄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등 상호 지위상 위력관계인 점은 인정되나, 위력을 실제로 행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는 러시아 출장 중 최초의 업무상 위력간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도 순두부 등 안희정이 좋아하는 메뉴를 구해 오는 등 주어진 업무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 일했다. 둘째, 사건 이후에도 제3자에게 안희정에 대한 존경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셋째, 피해 후유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 업무를 잘 수행했다. 그러니까 피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한 것처럼 보이므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 마디로 "피해자답지 않음"이 무죄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아마 몰랐던 것 같다.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것도 지근거리에서 수행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마음을 다해'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의 욕받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김지은씨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지적된 정황 중에 해외에서 피해 다음날 피고인이좋아한다며 순두부를 파는 식당을 찾아갔다는 증인이 있었다. 김지은씨는 지

²⁾ 선고공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에 쓴 다음 칼럼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이 글에서는 그 칼럼 일부를 요약하도록 하겠다. 권김현영, 2018년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 "안희정과 재판부가 유죄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7607.html 참고,

사가 순두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먹겠다고 해외에서 길을 찾아다닌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라고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김지은씨의 진술은 배척되었다. 실제로 순두부를 사러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랬다고 한들 그것은 수행비서진의 주요업무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분노한 점도 바로 여기였다. 여성뿐만아니라 남성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력에 의해 벌어지는 일들을 감내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회식, 위력에 의한 등산 등을 경험하지 못한 직장인이 오히려 소수일 것이다. 상사가 욕하고 때리고 만져도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김지은씨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르지만 직장인들은 알고 있는 것은 그뿐 아니었다. 재판부에서는 위력간음의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떤 판결에서도 본 적이 없는 '쪼개기' 신공을 펼쳤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눈 것이다. 즉,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지사와 비서가 위력관계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평소에 도지사로서 권력을 남용한 바 없고..."라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는데, 도지사가 비서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 자체가 바로 위력의 행사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피해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극적으로 대비될 만큼 다르다. 또한 위력의 존재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신입일 때, 조직 안에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만한 인적네트워크가 없을 때 등 유독 취약한 상황에서 위력의 존재감은 다른 경우보다 극대화된다. 공소가 제기된 총 10건의 사건 가운데 8건이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두 달 안에 이루어졌다. 최초의 위력가음은 근무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국외출장 중에

벌어졌다. 안희정은 유력 대선주자였고 피해자의 임면권자이며,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판 관리라는 말을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력은 존재했고, 위력의 존재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누구의 말을 왜 믿는가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으며, 제출된 경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안희정은 휴대폰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3월 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으로 "합의에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자백했다. 진술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모순과 누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볼 수 없다"며 입법부로 공을 넘겼다. 판사는 '비동의 간음죄(No means no rule)'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말했지만, 비동의 간음죄보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이조항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투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오히려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조)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가 다 있다. 입법 미비는 핑계일 뿐이다

### 2심을 앞두고

워래 2심 재판 개시일은 11월 22일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8부 에서 형사 12부로 바뀌었다. 재판부와 변호인 가 연고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서 새로 선임된 피고인 안희정의 변호인과 형사 8부 소속 법관이 같은 과 동기 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심 때 역시 같은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된 적 이 있다 껍끄러우 재판부를 피해가려면 재판부와 동기거나 같은 연구회 춤 신을 고용하면 재판부 기피가 가능해진다. 1심 재판 때 피고인 안희정측의 법 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총 4명으로 그중 한 명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과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판사출신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2002년부터 14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16년에 변호사를 개업한 검 사출신 변호사였다. 안희정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위력 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행사된 위력이 재판에 얼마만큼이나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하가지만은 재판부가 반드시 유념해두었으면 하다. 이미 재판부는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 인 바 있다. 이렇듯 위력은 그 존재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연 다. 그 점을 재판부도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같은 제도를 만든 것 이 아닌가.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모를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바라마지 않건데. 2심에서는 미투가 만들어낸 변화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

#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응지워으로 맞서다

모라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활동가

2016년 '#ㅇㅇ계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 발운동이 시작되었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작가에 의한 성폭력부터 예술계 내, 공동체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까지 장기간 SNS를 통한 고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8년,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성은 사회적인 문제로 한층 더 가시화되었다. 2016년 '#ㅇㅇ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가들은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모임과 단체, 연대체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제안하는 활동들을 해오면서 현장에 직접 개입하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2016년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지원 및 고발페이지 운영, 반성폭력캠페인, 집담회, 정책제안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해결에 개입하는 피해지원 및 대응지원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자.

###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특성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서로 연애관계였거나 합의하에 일어난 것으로 교묘하게 탈바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가해자들은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 '과 함께 '가스라이팅' 2을 이용한다. 심리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로작업을 시작하는 예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관객, 청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너를 아낀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네 작업은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평가와 관심의 말들로 현혹하고 심리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 혹은 연인관계를 요구한다. 작품에 대한 평가와 관심, 피드백이 활발하지 않은 예술계에서 이런 관심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다. 피해자의 저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성폭력 판결기준에 따르면 이런 상황들은 성폭력으로 입증되기조차 어렵다. 가해행위자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예술작업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많다. 사진계에서는 사진 작가 '로타'에 의한 성폭력, '비공개 사진촬영회'에서의 성폭력, 영화계에서 '조 덕제', '김기덕'에 의한 성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상대방과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노출을 현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 '프로답지 못하다'는 압박이 들어온다. 또는 피해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예술작업을 함께 한다는 빌미로 불러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추행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 외에도 예술현장에서 외모평가와 품평, 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은 일상적으로 예술가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예술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흐드는 가해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폭력과 협박 강제

¹⁾ 심리적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발생하는 성폭력

²⁾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로 이뤄지는 성폭력이 아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네가 좀 더 연기를 잘 하려면…', '좀 더 글을 잘 쓰려면…', '예술을 하려면 성적으로도 자유로워야 해'와 같이 타인의 꿈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빌미로 이뤄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피해를 용기내어 말해도 침묵 또는 2차 가해로 돌아오는 예술계의 분위기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 만든다.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이해를 바탕으로 가해행위의 수법이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강제적인 폭력과 협박이 성폭력의 주요수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꿈과 재능, 미래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지원의 어려움

'미투운동'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부문별 신고센터〉와 같은 기구 들을 100일간 임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예술분야별로 성폭력피해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서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에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해결의 특수성 이 담겨있다. 부산문화예술계의 피해지원 과정을 살펴보면 90% 정도가 사법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이다. 이럴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담과 의료적인 지원일 뿐 사건 해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 지게 된다. '미투' 이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동시에 가해행위자에 대한 온당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 으로 사건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당연한 요구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일반적인 지원에 국한될 경우,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적극적인 액션을 통한 '대응'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나무숲' 운영을 비롯한 항의방문, 면담요청, 기자회견, 언론보도, 관련기관 신고, 컨설팅 요청 등과 같은 다양한 활로들을 모색하고 있다

### 하나,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 오래 시간 동안 성폭력을 은폐해왔던 분위기 속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많고 무화예술계 성희롱에 관한 법안 자체가 없으며 예술인들은 고 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예 술계 내에 존재하는 위계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여 법적대응 시 가 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예술인들은 직장과 같이 고용관계로 이루어져있 지 않고 대부부 프리래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마땃한 책임을 물을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가령 사건 해결을 위해 가해행위자를 호명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도 없으며 가해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져줄 수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를 통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해결은 현재 불가 능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1차 권고문에 발표되었듯이 "현재는 문 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문제를 자율적인 개선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계 내에 독자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응센터의 자체적인 대응에 기 대는 것이 아니라 무화예술계 내의 공적인 시스템 및 기구를 연결하여 해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본다.

### 둘, 예술대학 성폭력문제의 심각성

부산성폭력상담소와〈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의 40%는 예술대학의 교수성폭력 사건이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 의 성평등센터나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상 태에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이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에서 예술대학 교수나 강사의 성폭력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예술계의 경우 대학과 현장은 분리되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예술대학 강사나 교수들은 대부분 예술현장에서 작가나 심사, 비평을 동시에 하는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 대학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예술현장에 나와도 자연스럽게 가해교수나 강사와 만나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 성폭력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수들의 징계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술계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반대로 예술현장에서 성폭력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도 어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사나 교수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구조는 피해자들에게는 침묵 속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해도 무방한 조건이 형성된다. 가해자들은 이런 허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어떠한 제재도 받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 셋, 가해자 한 사람과 여러 명의 피해자

예술계 내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깊고도 촘촘하다. 프리랜서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예술계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환경일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예술계 내의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폭력이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예술계는 예술고나 대학, 학원, 문하생의 개념으로 선생과 교수를 통해서 예술을 배우는 개념이고 또는 도제시스템을 통해서 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3이는 예술계에서 한 사람이쌓는 명성과 지위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구조이다. 작가, 대학의 강사와교수 심사위원, 자문위원, 협회대표, 해외 진출 등 광범위한 지위와 역할이 한

³⁾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재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혹은 평생 기량을 닦고 연마해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 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다. 특히 클래식음악, 국악, 무용. 순수미술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예인 사업이 대형 시장화되면서 청소년 연습생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문학이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참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보면 그 이름 자체가 어느새 예술계에서 거역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 있다. 예술계는 인맥과 네트워크가 예술 활동이나 작업의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강제성이나 위력이 없어 보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이처럼 구조 내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힘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침묵과 동조, 공모가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술계의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등의 사건을 통해 알수 있듯이 힘이 있는 예술가 한 명이 저지르는 성폭력은 지속적이며,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계의 구조적 상황에서는 이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더라도 증거위주의 조사와 공소시효라는 제한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 넷, 문화예술계 내에서 가해행위자에 대한 제제의 부족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가해행위자들은 잘못을 해도 예술계 내에서 어떠한 제재나 배제를 받지 않았다. 문화예술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보조금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이윤택'과 '고은' 시인 역시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계 내에서 가해행위자에 대한 지원금 배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성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역문화재단과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예술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는 가해자들이 예술현장의 심사나 지원을 받지 아니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가해를 행하였을 시 예술계 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고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해결에 있어서 예술계 내 구조 안에서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피해지원 및 대응 시에도 이를 적극 이용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다섯,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 내에 책임묻기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해결의 또 다른 어려움은 가해자가 속한 예술조직이나 예술협회 등의 운영위와 대표들이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이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협회는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나 대응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조직 내 가해자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 해결을 전문가와상의하여 진행하기보다 사건 해결을 방해하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는다. 참고로 스웨덴영화계 '미투운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공격당하지 않는 구도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협회와 법과 제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개인의 문제가 아닌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임에도 피해자개개인이 감당해야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체계를 만들고 예술계 조직과 공동체에 사건을 해결할 의무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한다.

이 글에서는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대응센터〉에서 진행한 대응지 원의 특징들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성을 녹아내려고 하였다. 문화 예술계 성폭력의 특성과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이루 어져야 하며, 지원의 방식 또한 예술계 내에 문제를 묻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야 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일반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받을 경우,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자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자가 문화예술계의 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분야 가 존재하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성폭력 유형을 띄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술계 '미투'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예술계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들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 '미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그 기구를 통한 법과 제도적 정비, 피해지원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감행하면서고발하는 '미투'는 반복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기

승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 사례1) A포르노사이트에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 우리는 A포르노사이트가 요구하는 절차대로 삭제요청을 진행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시 A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아이디가 차단당한 상태였고, 우리는 우리가 작성한 글의답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 사례2) B포르노사이트에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 우리는 삭제요청을 위해 접촉가능한 루트를 찾았지만,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이트다 보니, 해당 불법포르노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찾지 못했다. 적지 않은 포르노사이트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고, 삭제지원을 더 진행하기 어려웠다.
- 사례3) C포르노사이트에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가 0월 00일 오전,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당일 오후에 '서버지가 해외인 불법포르노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특정한 해결방법을 염두에 두고 벌인 판은 아니었다. 애초에 디테일하게 기획하지도 않았다. 서버지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지원도 어려워지고 경찰 수사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해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도 국내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동료가 필요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저기 바다 건너의 누군가 도 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잡을 수 없다면, 현 지 경찰과 직접 닿을 수는 없을까? 해외단체가 수사과정에서 같이 협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포르노사이트의 서버지가 해외라서 다들 처치곤란이라면 그 럼 그 서버지가 있는 해외에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을 하는 단체와 협 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했다. '해외에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자!', '와, 좋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럼, 만나보자!', '우리 다같이 만나서 포르노사이트 다 조져버리자!', '그런데 돈이 없네?' 돈이 없음에 슬퍼하는 것도 잠시, 때마침 2018년 한국여성재단의 〈여성이안전한 세상 만들기〉 사업의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체 구축사업〉 활동기의 발단이었다.

# 국제연대의 필요성

웹하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포르노사이트 등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이버성폭력 근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국제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서버지가 해외에 있는 불법포르노사이트 때문이다. 여기서 불법포르노사이트는 한국남성을 위해 한국인 운영자가 한국어로 운영하는 사이트임이 분명하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지만 해외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한국여성들의 피해촬영물은 '국산야동'으로 소비된다. 그런데, 피해촬영물의 재유포가 워낙 활발하다보니 한국에서 찍힌 영상이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있는 해외포르노사이트까지 흘러간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찍힌 영상도 한국에 '중노', '대만 일반인'과 같은 키워드로 흘러 들어왔다. 여성들의 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의 남성들에게 '야동'으로 소비되고 있다. 마치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산'과 '수입산' 코너마다 수많은 인간이 유통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본 단체에 상담접수 된 국내 여성들의 피해촬영물은 일본포르노사이트에, 중국포르노사이트에서 발견되고 있는 동시에 대만 피해자의 피해촬영물 또한 한국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곤 한다. 다른 나라의 상황들도 이와 비슷하다

자국의 여성이 이렇게 해외에 팔려가는 와중에도, 불법촬영 이슈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나서겠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전세계의 NGO들이연대하여,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법·정책 등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피해자를 연계·지원하고, 국제수사공조의 방법을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을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 활동 과정

### 3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기획서 하나로 지금까지 조사했던 해외단체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미국, 일본, 영 국, 독일,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등 10개가 넘는 단체에 메일을 보냈다. 분명 메일을 3월 첫 주에 보냈는데, 답변이 오는 데까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이 넘 게 걸렸다. 연락도 이렇게 안 되는데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애가타게 그들의 답변을 기다렸다

#### 4월

지금까지 전전긍긍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단체에서 답변이 왔고 화상전화를 통한 비디오콜을 진행했다. 우리는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 었다. 다들 삭제지원, 포르노사이트 수사를 힘들어했고, 함께 논의하고 싶 어 했다.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는 방문할 단체를 2곳으로 추려야 했고. 대만 TWRF(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1와 미국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2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먼저 대만에서는 NCP(Non Concensual Pornograhpy). 즉 비동 의 유포피해가 심각하데 관련하 법이 없어 현재 입법 초안을 추진 중이다 대 만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다. 연대하는 의미에서 입법 진행에 도 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고, 피해자지원체계 공유와 더불어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대만의 TWRF를 첫 번째 방문단체로 결정하였다. 두 번 째 방문단체로 미국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CCRI와 비디오 콜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NCP를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ENOUGH ACT : Ending Non Consensual Online User Graphic Harassment Act)이 발의되어 오는 9월 하워의워에서 투 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의 법안이지만, 국제공조의 근거법이 마련 되면 한국의 피해자지원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국에 서버를 두 포르노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공조 담당자는 우 리나라에서는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가 불법이라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 해도 미국에서는 '리베지포르노'가 연방법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왔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연방

¹⁾ 홈페이지 : https://www.twrf.org.tw/eng/index.php

²⁾ 홈페이지: https://www.cybercivilrights.org/

법이 통과되면 국내 사이버성폭력 수사에 도움이 될지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에 더 확신을 가지고 만남을 준비했다.

### 5월 : 대만 출장

- 1) 한사성은 5월 말,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TWRF와 대만의회(Legislative Yuan)를 방문해서 한국과 대만의 사이버성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주고받았다. 7시간이 넘도록 쉬는 시간 한번 제대로 가지지 못할 정도였다.
- 2) 대만의회에 방문해서는 대만의 법이 한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여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다. 대만 또한 촬영물 유포피해가 심각하기에 현재 TWRF는 대만의회와 협력하여 유포가해에 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대만의 법안은 '유포'에 집중되어 있어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나 합성사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형태로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그들은 플랫폼 규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의 플랫폼 '자율심의'에 대한 허점도 같이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촬영물로 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에게 '알아서 잘 해줘!'라고 맡겨버리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문제의식을 공유했다.

### 6월: 미국 출장

1) 한사성은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에 위치한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와 미팅을 진행했다. 삭제지원에 대한 방법, 가해자(플랫폼 운영자나 유포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방법과 NCP 처벌법도 논의했다. 미국에서 NCP 를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ENOUGH ACT : Ending Non Consensual Online User Graphic Harassment Act)이 발의된다면 피해촬영물을 직접 올리고 유통시키는 한국 불법 포르노사이트 운영자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CCRI와 논의 후, 미국외회에 한국시민단체의 입장으로 한사성의 탄원서 까지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CCRI와 한사성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 CCRI를 만난 뒤 한사성은 CCRI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있는 핫라인팀 (Helpline)을 만났다. CCRI는 한사성처럼 단체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전문기관인 핫라인팀(Helpline)을 따로 두고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양국의 사이버성폭력 양상과 지원내용을 공유했다.

### 변화되어야 할 것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개별 NGO의 활동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국가 차원에서 삭제지원 문제와 포르노사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연방법이 통과되어도 결국 한국정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정부에서 삭제지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문제들은 인터넷 사용의 자유와 자주 부딪힌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의 자유를 확대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이버성폭력, 더 나아가서이 시대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사이버공간도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를 이루는 공간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폭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의 규칙이 필요하다.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다. 어떤 공간에서든 규제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다.

### 향후 계획

7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모든 출장을 마쳤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사성은 ENOUGH Act. 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대중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미국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락했던 단체들로부터 공유 받은 단체소개, 각 단체별 사이버성폭력 관련 정책·법·피해지원 내용 등을 모아 국제적인 사이버성폭력 대응의 장으로 하나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혹자는 연방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외단체와 업무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진짜 나아지는부분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이 사업 하나로 안 되던 국제수사공조가 갑자기 다 해결되거나, 모든 포르노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촬영물이 삭제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걱정보다는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는 생각이다. 일단 발로 뛰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수 있는 단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워낙 부족한 예산에 2건의 출장을 진행하면서 개인 활동가들의 사비를 모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성은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연대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다.

#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

김보명 | 여성학 연구자

지난 6월, 한국사회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들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멘이라는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했던 우리 모두가 갑자기 예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사정으로, 어떻게 제주도 땅에 발을 딛게 되었는지,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예멘인들을 환대해야 하는지, 이슬람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온 낯선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공존할 수 있을지, 묻고 답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들이 예멘인들을 테러리스트, 광신도, 부랑자, 범죄자, 강간범 등으로 정의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이유로 난민수용을 반대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와 저렴한 노동력으로의 활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어느 쪽이든 예멘 난민들은 우리와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생명과 인권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야만적이고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들로 낙인찍히거나혹은 반대로 우리의 도움과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력하고 순수한 존

재들로 낭만화되었다. 전쟁과 재난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세계 속에서 삶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저항하는 사람들로서 난민의 얼굴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난민반대의 목소리에는 또한 우리가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망각과 낭만화가 자리 잡고 있다. 난민반대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그 경계가 확인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쟁과이산(displacement)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정치적 격동과 그에 따르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목격하고 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재구성되어 왔으며, 또한 이미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탈북민들을 수용하면서 국제화와 다문화를 말하는 나라임은 망각된다. 지금의 반-난민 정서는 그간 한국사회가 정책과 대중문화를 통해 이야기한 다문화주의가 얼마나 표면적이고 단순한 것이었는지를 입증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백인과 유럽인들을 선망하고, 흑인이나 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이류로 취급하며, 다양한 배경의결혼이주여성들이 갖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역량들을 너무도 쉽게 삭제해 버린다. 이방인들은 풍부한 문화자본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유능하고 자유로운 엘리트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문화에 순순히 동화되어 재생산자와 노동자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

### 난민반대의 대중적 목소리로서 여성인권과 젠더(기반)폭력

난민반대 담론에서 가장 놀라웠던 지점은 여성인권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민반대의 대중적 목소리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는 자국의 여성과 아이들은 물론 서구의 여성과 아이들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갑자기 난민의 위협 앞에 노출된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묘사

되기도 하였다. 마치 예맨 난민의 도착 이전의 한국사회는 홈리스도, 범죄자도, 실업문제도, 세금부담도,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없던 나라였던 듯 말이다. 종교이자 문화로서의 이슬람은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실천으로 그려졌고, 무슬림 여성들과 남성들은 비판적 이성이나 저항적 행위성을 발현할수 없는 문화의 꼭두각시로 간주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폭력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이해되고 또 바꿀수 있는 무엇으로 접근되었지만 예맨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폭력은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본질로 정의되었다. 조혼과 여성할례, 히잡과 같은 문화적 실천이 특정한 시대와 상황에 놓인 이슬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조건과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정에서 문화적 관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자, 그리고 그 둘이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 모두가 어떻게 끊임없이 재구성되는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 난민반대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서술되는 방식

난민반대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서술하고 전시하는 방식과 전략은 또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윤리나 지향, 그리고 방법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특정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집단의 남성들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그려내면서 본질론적으로 환원하고 정형화하는(stereotyping) 서술들은 성폭력의 원인이 남성의 통제불가능한 욕망이나 본능에 의해 일어난다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함의를 덧붙였을 뿐이다. 도시 공간을 배회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 집단이 갖는 위험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여성의 불안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은 전반적인 사회통제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억압이 시민권이나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던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경험, 그리고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강화되는 반-테러리즘 정책에서 여성인권이 안보의 대상으로 기획되고 배치되는 현실을 다시한 번 떠올리게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떠도는 혐오 및 가짜 뉴스에서 무한 반복되는 무슬림 포비아와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으로서의 젠더(기반)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상화는 그간 쌓아온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삭제한다. 상처받고 손상된 채 버려진 피해자로서의 예멘 소녀들과 여성들은 재현의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내던져진 채 포르노그라피적으로 전시되었다. 그간우리가 만나거나 그 안녕을 걱정해본 적 없었던 예멘 여성들과 소녀들은 이제 난민혐오의 정국 속에서 자신의 역사도, 문화도, 목소리도, 저항적 주체성도 박탈된 피해자로 소환되어 한국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요구하기 위한 증거물로 활용되었다.

결국 지난 몇 달간 각종 포털사이트와 여초 커뮤니티들, 그리고 SNS를 시끄럽게 하였던 절박한 '여성인권'의 목소리 어디서도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인권은 여성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로 치환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시민권자 여성들의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으로 축소되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재난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상실하고 국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환대는 '국민이 먼저'라는 권리의식 앞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나의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계를 단단히 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격리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격리와 보호의 힘은 국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상상되었다. 결국 난민혐오 담론을 추동한 주된 정동적 기제로서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분노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국가 권력의 재생산에 공모하는 페미니즘이 빠르고 쉽게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충돌과 상호작용

혐오뉴스와 선동적인 언어의 표면을 넘어,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의 충

돌은 있어 왔고. 또한 그 충돌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은 국제 여섯인권우돗과 지역여섯우돗듴에서 이미 꾸주히 모색되고 있다. 1990년대 부터 혹은 그보다 앞선 시기부터 보편적 규범이자 도달점으로서 여섯의 인권 을 지향하는 국제여성인권운동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다문 화주의 간에는 오랜 대화와 토론 협상의 과정이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은 이 미 그 시작에서부터 제국주의 인종주의 자본주의와의 복잡한 과계 속에서 형섯되었으며 제국의 여섯들과 식민지의 여섯들 백인여섯들과 흑인여섯들 시 민권자 여성들과 이주민 여성들 간의 경험 정체성 이해관계의 차이들은 이 미 페미니즘의 역사에 뿌리 깊게 연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제더 정치학과 인 종 정치학의 궤적은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정치학의 의미와 효과 또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와 페미 니즘은 배타적이거나 서로 적대하는 범주들이 아니다. 젠더 정치학은 이미, 그 리고 언제나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국가적, 인종적, 계층적 차이들과의 만남 과 겹침, 충돌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구성 하는 젠더 정체성은 특정한 시대, 문화, 종교, 계층, 성적 지향, 장애여부 등의 복잡한 격자들 속에서 경험되고, 인식되며, 실천되는 담론적 지점이자 산물이 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충돌을 배타적인 정치학 간의 충돌이 아니라 동시대를 구성하는 실천과 저항의 언어로서 두 정치학이 상호 작용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난민인권과 여성인권은 상호 배타적인 의제가 아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여성들이며, 이들이 감수하는 위험과 위기는 남성들의 그것과 다르지만 또 겹치고, 이들의 생존과 저항의 방식 또한 그러하다. 여성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특정한 문화, 종교, 인종,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며, 따라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갖는 경험, 정체성, 이해관계는 이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번영을 무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이해되거나 실현될 수 없다.

### 1960년대 이후, 서구 중심적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196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성장과 다문화주 의의 도입을 동시에. 그리고 교차적으로 경험한 국가들에서 두 정치학 간의 관 계는 계속해서 새롭게 질문되고 또 구성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할례를 보는 과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문화적으로 특수한 실천이라 는 과점 그리고 이제는 '여섯'과 '전통' 간의 교차적이고 중층적인 관계에 대한 비판적 질문과 재구성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 접근이 변화해왔다. 그리고 비 서구 문화에서 일어나는 여섯폭력과 차별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규젓과 비판 의 시대를 지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페미니스트 행위성의 서로 다른 양식들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그 논쟁과 고민의 결 과로 우리는 여성할례를 서술하고 규정하는 언어에 대한 비판, 그 번역과 범주 화의 중층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할례의 다양한 형식과 지역 적 고유성에 대한 관심. 여성할례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입장과 의 식, 문화적 역능에 대한 이해, 문화적 실천이자 '전통'으로서의 여성할레가 갖 는 시공간적 궤적과 변화에 대한 이해. 서구 여성운동이 구성하고 개입하는 지 점으로서 '여성할례'에 내포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권력에 대한 거슬 러 읽기의 노력 등을 보게 되었다.

여성할례(female circumcision)는 이미 그 명칭에서부터 문화적 번역이자 정치적 개입으로서 구성된 담론적 산물이다. 이는 서구의 엘리트 페미니스트들의 호명을 기다리는 완결된 총체로서의 문화적 관습은 없다는 깨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적인 문화적 실천이 당사자 여성들과 그 문화 공동체에서 갖는 의미들은 계속해서 질문되고 탐색되고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한 대변과 재현이 불가능하기에 포기해야 하거나 '당사자주의'라는 얄팍하고 순진한 선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잉 결절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의미의 결들을 거슬러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

소리를 구성해야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윤리적 책임과 성찰로 이어졌다. 중요한 점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모두 비서구 여성들을 말없는 피해자로 박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미 해방되고 자유로운 주체로 낭만화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저항적 행위성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며, 어떤 맥락에서든 우리는 피해자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찾아내고 이야기해야 한다. 차별과 폭력이 만들어내는 삶의 타격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삶의 가능성을 모두 잠식하지 않도록 싸우고 있으며, 그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서구와 비서구, 이슬람과 기독교, 과거와 현재 모두를 거슬러 존재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양식과 의미들이 다르며, 마찬가지로 그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고 맞서 싸우는 저항의 양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름은 페미니즘과 인권운동에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시대, 문화, 종교, 공간을 살아가는 전능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제한된 주체들이며, 따라서 우리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관점과 행위성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계로부터 그 윤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나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타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도달하거나 구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한정되고 취약한 주체들임을 인정하고 나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는 타자들에게 곁을 내줄 수 있을 때 차이들 사이를 연결하고 메우는 힘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 그렇다. 난민들의 다수가 여성들이며,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인종화된 동시에 젠더화된 이상,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이다. 시리아에서, 예메에서, 이라크에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

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순과 폭력 때문이라면, 그리고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단지 주어진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과 다른 소수자들에게 불공평하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구조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이다. 국가는 없지만 인권은 있는 사람들로서의 난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 우리가 페미니스트로서 말하고 실천하는 여성인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바로미터이기에,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이다.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펴낸곳**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펴낸이 이미경

**만든이** 김보화·장주리

**디자인** 디자인이즈

**펴낸날** 2018년 12월 31일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3층

전화 02-338-2829

팩스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블로그 www.stoprape.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svrc1991

트위터 www.twitter.com/stoprap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svrc_sisters/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여'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로 신뢰하며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

성별, 성적지향,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이 차별을 만들지 않는 사회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멋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부, 기부는 더 넓은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카드이체, 일시기부 등 후원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sisters.or.kr/('상담소 후원하기' 메뉴) 전화 02-338-2890~2 (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84-224994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발간도서**



로빈 윌쇼 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역 미디어 일다 | 201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지는 데이트 강 간과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그 고통과 치유와 예방책 에 관한 치밀하고 섬세한 기록!



엘렌 스노틀랜드 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역 사회평론 | 2016

자기방어의 '방법'을 넘어 자기방어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책, 싸우는 여자가 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깨워라. 자기 방어 훈련은 몸과 마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여성주의적 실천이다!



